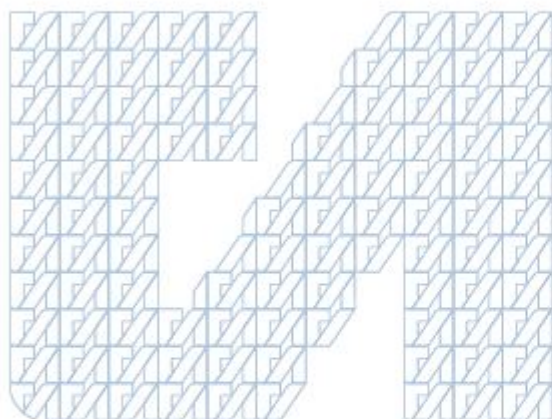


# 세종시의 세외수입 효율 적정성 검토 연구

A Study on Appropriation rate of Non-Tax Revenues of  
Local Governments in Sejong Special Autonomy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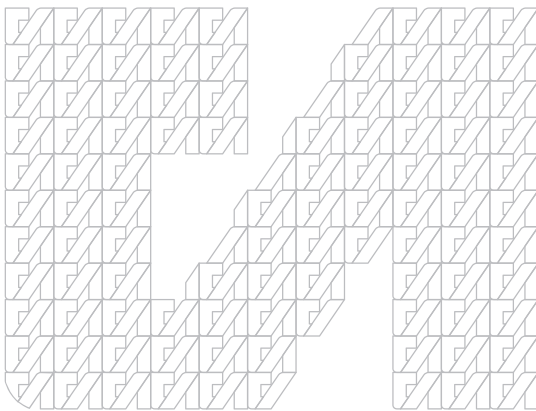
김흥주



# 세종시의 세외수입 효율 적정성 검토 연구

A Study on Appropriation rate of Non-Tax Revenues of  
Local Governments in Sejong Special Autonomy City

김흥주



<b>연구책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흥주 / 세종연구실 연구위원</li> </ul>
<b>연구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지혜 / 세종연구실 위촉연구원</li> <li>• 박서윤 / 세종연구실 조사원</li> </ul>

**정책연구 2018-27**

**세종시의 세외수입 효율 적정성 검토 연구**

발행인 박 재 목  
 발행일 2018년 9월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전화: 042-530-3500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si.re.kr>  
 인 쇄 청맥기획 TEL 042-487-2589 FAX 042-487-1887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 요약 및 정책건의

##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사회복지수요의 증가 및 지방분권과 관련해 재정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실에서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을 통해 재정지원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자의 경우 조세에 대한 주민들의 저항이 클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권의 제약으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등에 있어서 그 한계가 작용하는 것에 반해 후자의 경우 법령에 크게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노력 정도에 따라 세원의 개발 및 확대가 상대적으로 용이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세외수입 징수율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원가대비 효율체계 역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이에 세종시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증거기반으로서 효율 적정성 검토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를 위해 공공시설 및 서비스 항목의 원가분석을 실시함

## ■ 연구목적 및 내용

- 본 연구는 목적은 첫째, 세종시를 중심으로 세외수입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체계를 검토하는데 있음
- 둘째, 세외수입 항목별 원가분석을 통해 현행 효율의 적정성을 파악하고 향후 산정기준 설정 및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

- 마지막으로, 원가분석을 통한 요율산정으로 사용료 및 수수료 조례 제정의 근거자료와 함께 향후 세외수입 요율 산정방식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도화 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주요연구내용: 서론, 이론적 검토 및 선행연구 고찰, 세종시 세외수입 실태 및 문제점, 세외수입 원가분석 및 요율 적정성 검토, 결론 및 정책적 제언으로 구성됨

## ■ 연구방법

- 세외수입에 관한 이론적 검토, 선행연구 검토 등 문헌조사, 세외수입 현황에 관한 자료조사
  - 세외수입 관련 이론적 검토 및 선행연구 고찰
  - 세종시의 세외수입 종류별 현황 조사, 운영실태, 문제점 검토
- 세외수입 항목(사용료, 수수료 등)에 대한 원가 및 요율분석
  - 세외수입 항목별 원가계산 대상선정(1차, 2차 검토)
  - 세외수입 항목별 원가분석을 통한 요율분석/실제 세외수입 요율과 비교 분석을 통한 적정원가 검토
- 세외수입 항목 산정기준에 대한 전문가 의견 검토(10명 내·외의 전문가)

## ■ 연구결과

- 본 연구는 이러한 입장을 견지해 14개의 세외수입 항목을 선정하였으며 시설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원가분석을 실시하였음
- 원가분석을 위하여 각 담당부서로부터 결산자료 등을 받아 이를 통해 운영경비를 산출하였고 자산취득비, 토지가격, 건물가격의 자료 협조를 얻어 자본비용과 감가상각비를 산출함
- 그리고 해당 세외수입 대상 해당연도의 총 수입금액 자료를 확보하

여 원가대비 수입금액을 비교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이 분석결과가 도출되었음

- 요금의 원가보상율을 파악하기 위해서 세외수입 항목 당 수입금액대비 원가 즉, 사용료를 원가로 나누어 계산하였으며, 봉안자연장, 장례식장, 화장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들이 원가보상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세외수입 항목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모두 현실화시키기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세종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세외수입 요금을 적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특히, 10% 내외의 세외수입 항목에 대한 우선적 효율 적정성 검토가 필요함

**[세종시의 세외수입 요금 원가보상율]**

사용료 종류	요금현실화 1(%)	요금 현실화 2(%)
수영장 사용료	27.76	16.75
농어민체육센터 일반사용료	56.47	25.01
세종체육시민회관일반사용료	123.52	55.29
조치원전용축구장 사용료	89.22	60.00
조치원전용테니스장 사용료1	12.78	11.45
조치원전용테니스장 사용료2	17.04	15.27
장례식장 사용료	121.71	109.23
화장장 사용료	95.82	91.00
봉안자연장 사용료	569.96	503.55
장군면 목욕탕 사용료	8.74	3.57
합강캠핑장 사용료	52.25	23.33
주차장사용료(공사·공단)	15.77	7.78
공원·녹지점용료	48.15	
전주점용료	15.23	31.65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78.90	

- 다음은 7명의 재정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공공성, 경제성, 편익성, 배제성, 가능성, 기여, 시장정보 등 8가지 부과기준을 근거로 설문을 실시, 부과기준 항목에 동의한 경우가 과반이 넘으면 그에 한해 가중치 값을 적용하여 각각의 항목별 적정 요율을 검토하였음
- 전문가 조사를 통한 가중치 값의 합계를 통해 적정요율을 검토하였고 원가보상율과 비교분석을 실시함

[원가보상 적정요율 산정 요약]

세외수입 항목	적정요율(%)	요금현실화1(%)	요금현실화2(%)
수영장사용료	100.00	27.76	16.75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일반사용료	87.86	56.47	25.01
세종체육시민회관 일반사용료	87.86	123.52	55.29
축구장 사용료	81.43	89.22	60.00
테니스장 사용료	100.0	17.04	11.45
장례식장 사용료	100.0	121.71	109.23
화장장 사용료	100.0	95.82	91.00
봉안자연장 사용료	100.0	569.96	503.55
목욕탕 사용료	81.43	8.74	3.57
캠핑장 사용료	81.43	52.25	23.33
공영주차장 사용료	100.0	15.77	7.78
공원·녹지점용료	87.86	48.15	
전주점용료	87.86	15.23	31.65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87.86	78.90	

■ 정책건의

□ 원가분석 방법의 명확화, 원가분석을 위한 자료 및 정보관리

- 먼저, 세종시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세외수입의 요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세외수입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원가분석이 동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원가분석은 합리적인 세외수입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원가분석의 방법의 설정 및 개선이 요구됨
  - 세종시의 경우 세외수입에 대한 원가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향을 보이며 특히 회계와 원가가 연동되지 못해 원가분석을 위해서 자료를 재작성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즉, 제도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원가분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둘째, 원가분석을 위한 정확한 자료의 구축과 정확한 원가분석이 함께 동반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원가분석을 고려한 회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적정요율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운영원가가 매우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세종시의 경우 전체 시설을 통합한 계정으로 관리하는데 그 한계가 있음
  - 아울러 시설 및 서비스와 관련된 수입 지출항목의 통일된 기준 마련과 함께 직영으로 운영되는 서비스의 경우 전담관리조직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해 원가정보 관리가 부실한 상황임

## □ 적정 요율 기준 및 표준운영 원가 제시 검토

- 첫째, 요율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원가보상율의 합리적인 결정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음
  - 이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원가가 분석된 이후에 이 원가를 통해 어느 정도의 사용료·수수료를 부과해야하는지에 대한 것임
  - 그러나 모든 세외수입 항목에 대해 원가분석의 결과를 적용하여 부과함에 있어 각 세외수입 대상의 특성(공공성, 시장성, 배제성, 편익성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둘째, 일괄적으로 하나의 요율을 적용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에 개별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원가보상율



을 달리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함

- 세외수입 대상의 성격, 여건 및 상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동의하는 객관적·합리적인 요율결정 기준의 마련은 매우 어려움
- 이에 대한 한계점을 인지하여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지표의 개발과 적용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 셋째, 요율(가격체계)은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견지해 서비스의 공급 비용을 충당할 수 있고 해당되는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가격이 설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물론 특정의 서비스에 한정해 공익성을 고려해 요율체계를 일부 차등화 할 수 있으나 원가보상을 충당하는 가격의 설정에 대한 기본 원칙은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주만수, 2015)
- 그 예로 상하수도 요금, 지하철 요금의 경우 사용료의 요율이 원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현실상황에서 이들 서비스가 지속적인 공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정지출과 비용부담자간의 공평성의 문제로 갈등이 유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사용료를 중심으로 한 적정요율체계에 대한 고민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임성일, 2014)

○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 등을 중심으로 공익성이 훼손되지 않은 범위에서 유사한 항목에 대해서 지역적 특성, 통일성을 반영해 표준적인 원가를 제시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세외수입 현황에서 보듯이, 시설 및 서비스의 종류, 이용자, 그리고 운영주체 등이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사한 유형의 시설 및 서비스 역시도 그 원가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타 지자체와 비교를 통한 원가기준의 설정 역시 불가능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적정요율을 결정하기 위해 표준적인 원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고 판단됨

## □ 정기적인 요율 현실화 반영, 적극적인 홍보

- 첫째, 사용료·수수료를 중심으로 한 세외수입에 대해 원가와 크게 차이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3년마다 요율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됨(주만수 외, 2015)
- 둘째, 세외수입 정책이 보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세외수입에 대한 인식과 순응이 중요하기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임
  - 즉, 세외수입에 대한 수익자 부담원칙, 원가현실화 적용 등 궁극적으로 주민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취지를 홍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의 크기보다 원가비용이 큰 대상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현재의 사용료·수수료 서비스가 장기적으로 제공되기 힘들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강조하고 지역주민과 소통을 통하여 이해를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조임곤·이상훈, 2013)

## □ 관련제도의 개선 방안 마련

- 첫째, 이용자수가 증가 될 수 있는 고민이 요구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수입금을 재투자 하는 방안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세외수입의 시설과 관련된 원가보상율은 무엇보다 운영주체, 방식, 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바, 원가보상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입을 증대하고 지출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당연함
  - 아울러 세외수입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그 효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자체적인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도 고려해볼 수 있음
- 둘째, 세외수입의 적정요율을 도출하고 이에 근거해서 요율을 조정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각 대상별로 세외

수입을 관리 운영, 그리고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이 요구됨

- 무엇보다 원가분석 및 적정한 요율을 도출하기 위해 단순히 얼마 정도의 원가보상을 하겠다는 시도 보다는 관련 전문가, 담당공무원, 회계사 등이 함께 공동으로 이를 위한 계획수립과 개선방안, 그리고 세외수입의 적정요금 수준에 대한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담당공무원이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적정수준을 도출,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셋째, 현재 복잡하고 다양하게 상의법규에 의하여 분산된 규정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단순화할 필요성도 제기됨
- 세외수입과 관련된 시설과 서비스의 경우, 매우 많고 그 운영방식 역시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시설물과 서비스에 대해 상의법규에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어 개별법령에 근거한 개별조례로 정해 징수하므로 체계적 관리의 어려움이 있음
- 이에 개별 조례에 분산되어 규정된 사용료·수수료의 요율을 포괄할 수 있는 통합적인 규정을 정하고, 개별조례상에서 대상 세외수입의 부과목적, 부과근거, 부과방법, 부과시기, 그리고 부과기준 등에 대해서 개별적 사항만 규정하는 통합적인 법제화 추진 고려

#### □ 새로운 세외수입 발굴을 위한 노력

-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세종시에서 사용료 수수료를 중심으로 제공되는 세외수입 대상은 그 원가보상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살펴볼 때, 원가대비 사용료·수수료 요율을 높인다는 것은 주민의 저항을 고려한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세종시 차원에서 일정부분 원가기준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요율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은 있으나 이에 더해 새로운 행정서비스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를 부과하는 노력도 필요함

- 그 예로 스포츠, 레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부분에서 다양한 사용료 수수료를 적절히 발굴하여 세종시에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새로운 세외수입의 발굴을 위해서는 특정 서비스에 대해 다양한 방식의 부과 방식 고려,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 차 례

제1장 서론 .....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
2. 연구의 목적 .....	5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6
1. 연구의 방법 .....	6
2. 주요내용 .....	6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11
제1절 지방세외수입의 개념 및 특징 .....	11
1. 지방세외수입의 개념 및 법적 근거 .....	11
2. 지방세외수입의 분류 및 체계 .....	14
3. 지방세외수입의 특징 .....	18
제2절 지방세외수입의 제도변화 .....	20
1. 1950년대 이전 시기 .....	20
2. 1950·60년대 전쟁 전·후 시기의 세외수입 .....	20
3. 1970·80년대 개발시대 세외수입 .....	21
4. 지방자치시대의 세외수입(1990년대-최근까지) .....	22
제3절 선행연구 검토 .....	27
제3장 세종시의 세외수입 현황 분석 .....	37

제1절 우리나라의 세외수입 규모 .....	37
1. 세외수입 단체별 구성 .....	37
2. 지방세외수입과 지방세 규모 비교 .....	38
제2절 세종시의 세외수입 규모 .....	45
1. 세외수입 징수실적 .....	45
2. 세외수입 항목별 징수실적 .....	47
제3절 세종시의 세외수입 사용료·수수료 현황 검토 .....	52
1. 세외수입 사용료 현황 검토 .....	53
2. 세외수입 수수료 현황 검토 .....	55
3. 세외수입의 문제점 .....	59
<b>제4장 세외수입 요율 적정성 검토 .....</b>	<b>65</b>
제1절 세종시 세외수입 원가계산 대상과 기본가정 .....	65
1. 원가의 개념 및 계산 .....	65
2. 원가계산의 대상 및 기본가정 .....	68
제2절 세종시의 세외수입 원가분석 .....	74
1. 체육시설 원가분석 결과 .....	74
2. 은하수 공원 원가분석 결과 .....	85
3. 목욕탕 및 캠핑장 원가분석 결과 .....	90
4. 주차장 원가분석 결과 .....	94
5.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원가분석 .....	96
6. 공원·녹지 및 전주점용요율 분석 .....	99
7. 시설관련 원가 및 사용료 비교: 원가보상율 .....	104
제3절 세외수입 적정 요율산정을 위한 전문가 조사 .....	107
1. 조사방법 .....	107
2. 적정요율 산정을 위한 전문가 조사 분석결과 .....	108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113  
    제1절 연구결과의 종합 ..... 113  
    제2절 정책적 제언 ..... 117

참고문헌 ..... 122

부 록 ..... 125

## 표 차례

[표 2-1] 현행 세외수입의 분류 .....	15
[표 2-2] 사용료·수수료 관련 선행연구 .....	33
[표 3-1] 세외수입 단체별 구성비 .....	37
[표 3-2] 세외수입과 지방세 규모 .....	39
[표 3-3] 회계별 신장추세 .....	40
[표 3-4] 시·도별 회계별 징수규모 .....	43
[표 3-5] 세종시의 세외수입 징수실적(2016년) .....	45
[표 3-6] 세종시 전년도 대비 징수액 .....	46
[표 3-7] 세종시의 항목별 징수실적(2016년) .....	48
[표 3-8]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실적(일반회계) .....	49
[표 3-9]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실적(특별회계) .....	50
[표 3-10]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실적(일반회계) .....	51
[표 3-11]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실적(특별회계) .....	51
[표 3-12] 해당 부서별 사용료·수수료 조사 결과 .....	52
[표 3-13] 세외수입 사용료 현황 .....	53
[표 3-14] 세외수입 수수료 현황 .....	55
[표 4-1] 전통적 원가계산과 활동원가계산의 비교 .....	68
[표 4-2] 세종시의 원가분석 세외수입 항목 .....	70
[표 4-3]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표 .....	71
[표 4-4] 수수료 처리 조사표 예시 .....	72
[표 4-5] A시 수수료 원가분석 예시 .....	73



[표 4-6] A시의 점용요율 산정 예시 .....	73
[표 4-7] 수영장 운영비 .....	74
[표 4-8] 수영장 감가상각비 .....	74
[표 4-9] 수영장 자본비 .....	75
[표 4-10] 수영장 시설원가 .....	75
[표 4-11] 수영장 기준단위 .....	76
[표 4-12] 수영장 기준단위당 원가 .....	76
[표 4-13]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운영비 .....	76
[표 4-14]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감가상각비 .....	77
[표 4-15]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자본비 .....	77
[표 4-16]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시설원가 .....	78
[표 4-17]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기준단위 및 단위당 원가 .....	78
[표 4-18]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단위당 원가 .....	78
[표 4-19] 세종시민체육관 운영비 .....	79
[표 4-20] 세종시민체육관 감가상각비 .....	79
[표 4-21] 세종시민체육관 자본비 .....	79
[표 4-22] 세종시민체육관 시설원가 .....	80
[표 4-23] 세종시민체육관 기준단위 및 단위당 원가 .....	80
[표 4-24] 세종시민체육관 단위당 원가 .....	80
[표 4-25] 조치원 체육공원 축구장 운영비 .....	81
[표 4-26] 조치원 체육공원 축구장 감가상각비 .....	81
[표 4-27] 조치원 체육공원 축구장 자본비 .....	81
[표 4-28] 조치원 체육공원 축구장 시설원가 .....	82
[표 4-29] 조치원 체육공원 축구장 기준단위 .....	82
[표 4-30] 조치원 체육공원 축구장 단위당 원가 .....	82
[표 4-31] 조치원 체육공원 테니스장 운영비 .....	83
[표 4-32] 조치원 체육공원 테니스장 감가상각비 .....	83

[표 4-33] 조치원 체육공원 테니스장 자본비 .....	83
[표 4-34] 조치원 체육공원 테니스장 시설원가 .....	84
[표 4-35] 조치원 체육공원 테니스장 기준단위 .....	84
[표 4-36] 조치원 체육공원 테니스장 단위당 원가 .....	84
[표 4-37] 장례식장 운영비 .....	85
[표 4-38] 장례식장 감가상각비 .....	85
[표 4-39] 장례식장 자본비 .....	86
[표 4-40] 장례식장 시설원가 .....	86
[표 4-41] 장례식장 단위당 원가 .....	86
[표 4-42] 화장장 운영비 .....	87
[표 4-43] 화장장 감가상각비 .....	87
[표 4-44] 화장장 자본비 .....	87
[표 4-45] 화장장 시설원가 .....	88
[표 4-46] 화장장 단위당 원가 .....	88
[표 4-47] 봉안자연장 운영비 .....	88
[표 4-48] 봉안자연장 감가상각비 .....	89
[표 4-49] 봉안자연장 자본비 .....	89
[표 4-50] 봉안자연장 시설원가 .....	89
[표 4-51] 봉안자연장 단위당 원가 .....	90
[표 4-52] 목욕탕 운영비 .....	90
[표 4-53] 목욕탕 감가상각비 .....	91
[표 4-54] 목욕탕 자본비 .....	91
[표 4-55] 목욕탕 시설원가 .....	91
[표 4-56] 목욕탕 기준단위 및 단위당 원가 .....	92
[표 4-57] 목욕탕 단위당 원가 .....	92
[표 4-58] 합강캠핑장 운영비 .....	92
[표 4-59] 합강캠핑장 감가상각비 .....	93

[표 4-60]	합강캠핑장 자본비 .....	93
[표 4-61]	합강캠핑장 시설원가 .....	93
[표 4-62]	합강캠핑장 기준단위 및 단위당 원가 .....	94
[표 4-63]	합강캠핑장 단위당 원가 .....	94
[표 4-64]	주차장 운영비 .....	94
[표 4-65]	주차장 감가상각비 .....	95
[표 4-66]	주차장 자본비 .....	95
[표 4-67]	주차장 시설원가 .....	95
[표 4-68]	주차장 기준단위 및 단위당 원가 .....	96
[표 4-69]	주차장 단위당 원가 .....	96
[표 4-70]	대형폐기물 처리 읍·면·동 및 담당부서 .....	97
[표 4-71]	대형폐기물 판매 내역 및 수익금액 .....	97
[표 4-72]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조사표 .....	98
[표 4-73]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원가산출 내역 .....	99
[표 4-74]	공원·녹지 점용료 .....	100
[표 4-75]	공원·녹지 점용료 산정 .....	101
[표 4-76]	전주 및 점용료 현황 .....	102
[표 4-77]	전주점용료 산정 .....	103
[표 4-78]	세종시의 세외수입 총액 요금 원가보상을 .....	105
[표 4-79]	세종시의 세외수입 단위당 요금 원가보상을 .....	106
[표 4-80]	전문가 조사 참여자 .....	108
[표 4-81]	원가보상 적정요율 산정 .....	110
[표 5-1]	세종시의 세외수입 요금 원가보상을 비교 .....	115
[표 5-2]	원가보상 적정요율 산정 요약 .....	116

## 그림 차례

[그림 2-1] 지방세외수입의 구분 .....	12
[그림 3-1] 세외수입 단체별 구성비(2016년) .....	38
[그림 3-2] 세외수입과 지방세 규모(2016년) .....	39
[그림 3-3] 회계별 세외수입 징수규모와 증감률 .....	40
[그림 3-4] 경상적 세외수입 규모(2016년도) .....	41
[그림 3-5] 임시적 세외수입 규모(2016년도) .....	42
[그림 3-6] 시·도별 징수규모 .....	44
[그림 4-1] 원가의 구성 .....	67





#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1장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사회복지수요의 증가 및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재정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을 통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현실은 아직까지 급증하는 재정수요와 그에 따른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김진욱·김진태, 2018)

- 2008년 결산기준 재정지출이 136.6조 원에서 2017년 기준 207.7조 원으로 연평균 6.1%의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세입은 동기간 연평균 4.5%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이보다 낮은 2.6%의 증가세를 보임(이상훈 외, 2017)

※ 이 중에서 2017년 기준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29.3조 원에서 67.5조 원으로 연평균 12.7%로 전체 지출 규모 증가세의 2배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1.4%에서 32.6%로 지난 8년 사이 11.2%p의 급격한 증가를 보임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세수를 늘리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나 이는 주민들의 조세저항, 법률에 의한 징수로 높은 경직성 등 법적·환경적 요인에 의한 제약이 크기 때문에 주민과의 마찰이 적고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응징적 성격이 큰 지방세외수입의 확대가 모색됨(이세구·안주희, 2004)

○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자의 경우 조세에 대한 주민들의 저항이 클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권의 제약으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등에 있어서 그 한계가 발생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 법령에 크게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노력 정도에 따라 세원의 개발 및 확대가 상대적으로 용이함

- 사용자부담금(User Charge)으로 논의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세외수입은 일정한 공공서비스에 대해 사용자(수혜자)로 하여금 이용하는 대가를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자의적 필요성에 의해 서비스의 이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조세 부담에 대한 중압감 및 증세에 대한 정치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음(주운현, 2005; 주만수·주운현, 2015)
- 즉, 공공서비스의 수혜자에게 편익을 기준으로 한 공공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확보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잠재적 수입원으로 거론됨(김진욱·김진태, 2018)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세외수입 징수율이 현저히 낮은 이유로 지적되는 것은 법령의 미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부재, 체납전담조직의 미비 및 담당인력의 잦은 이동에 의한 전문 인력 부족 등이 대표적으로 논의되고 있음(임상수 외, 2014)
- 2014년 8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법적 기반이 확보되었고,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제도 및 운영 장치가 확보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실효성 있는 징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고승희 외, 2015)
- 이에 본 연구는 지방의 자체재원확보를 위하여 세외수입을 통한 재원 확충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세종시를 대상으로 세외수입의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시설 및 서비스 항목의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그에 따른 효율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고자 함
- 세종시의 세외수입 항목에 대한 원가분석을 통한 효율 적정성을 검토하여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정확한 증거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세외수입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율현실화에 관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이는 지방예산에서 적은 비중, 효율 현실화를 불가상승, 원가정보 파악의 어려움에 기인하고 있음
- 아울러 효율현실화가 이용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적절한 현실화로 수익자 부담원칙, 과세의 형평성 개선, 세외수입의 시장기능에 대한 왜곡방지, 그리고 무엇보다 세외수입 확보를 통한 지방재정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성이 큼

##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목적은 첫째, 세종시를 중심으로 세외수입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체계를 검토하는데 있음
- 둘째, 세외수입 항목별 원가분석을 통해 현행 효율의 적정성을 파악하고 향후 산정기준 설정 및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
- 마지막으로, 원가분석을 통한 효율산정으로 사용자 및 수수료 조례 제정의 근거자료와 함께 향후 세외수입 효율 산정방식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도화 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1. 연구의 방법

- 세외수입에 관한 이론적 검토, 선행연구 검토 등 문헌조사, 세외수입 현황에 관한 자료조사
  - 세외수입 관련 이론적 검토 및 선행연구 고찰
  - 세종시의 세외수입 종류별 현황 조사, 운영실태, 문제점 검토
- 세외수입 항목(사용료, 수수료 등)에 대한 원가 및 요율분석
  - 세외수입 항목별 원가계산 대상선정(1차, 2차 검토)
  - 세외수입 항목별 원가분석을 통한 요율분석/실제 세외수입 요율과 비교 분석을 통한 적정원가 검토
- 세외수입 항목 산정기준에 대한 전문가 의견 검토(10명 내·외의 전문가)

### 2. 주요내용

- 본 보고서는 1장 서론, 2장 이론적 검토 및 선행연구 고찰, 3장 세종시 세외수입 실태 및 문제점, 4장 세외수입 원가분석 및 요율 적정성 검토, 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으로 구성됨
- 1장은 서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방법 및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함
- 2장은 세외수입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를 함
  - 세외수입 개념 및 특징, 세외수입 부과기준에 관한 이론적 검토, 지방 세외수입의 제도변화, 그리고 선행연구 검토를 중심으로 함

- 3장은 세종시의 세외수입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함
  - 우리나라의 세외수입에 관한 전반적 현황, 세종시의 세외수입 규모, 세종시의 세외수입 현황, 세종시의 세외수입 문제점 검토
- 4장은 세외수입 원가분석 및 효율 적정성 검토를 실시함
  - 세종시 세외수입 원가계산의 대상과 기본가정, 세종시의 세외수입 항목별 원가분석, 세외수입의 적정효율 산정
- 5장은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하는 장으로 진행된 연구의 요약 및 향후 세외수입 효율 적정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음



##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지방세외수입의 개념 및 특징

제2절 지방세외수입의 제도변화

제3절 선행연구 검토

## 2장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제1절 지방세외수입의 개념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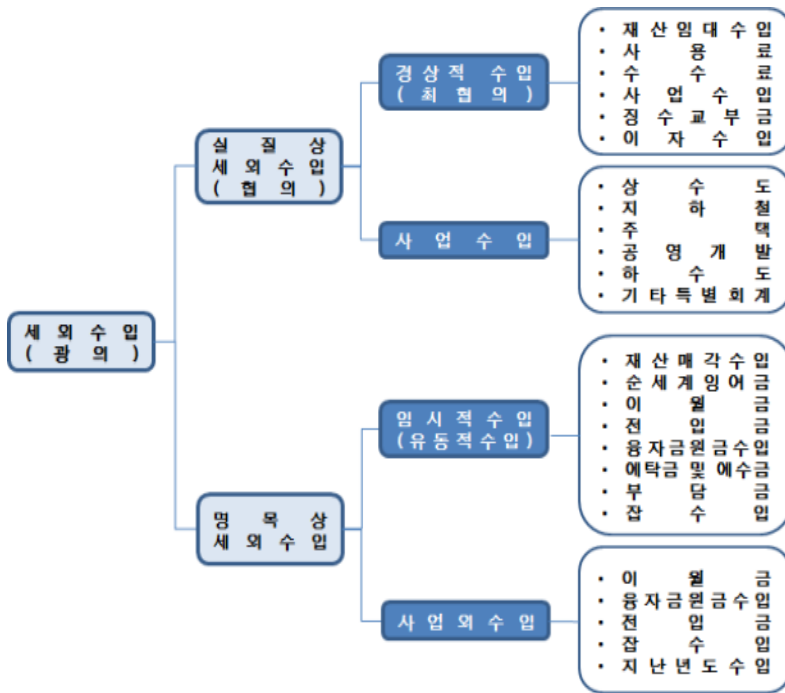
#### 1. 지방세외수입의 개념 및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는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되며 이 중 자주재원은 지방세수입과 지방세외수입이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함) 등으로 구성됨(김대영, 2014)
- 일반적으로 광의적인 개념에서 세외수입은 자체수입 중 지방세를 제외한 나머지 일체의 수입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음(김대영, 2014; 홍근석, 2015)
- 지방세외수입의 개념은 포괄하는 범위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며 일반적으로 선행연구에 따라 최광의, 광의, 협의, 최협의의 4단계, 혹은 광의, 협의, 최협의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음(홍근석, 2015)
  - 김대영(2014), 홍근석(2015) 등의 연구에 따르면 지방세외수입을 최광의, 광의, 협의, 최협의 등 4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임상수 외(2014), 고승희 외(2015), 최원구·김진아(2016), 이상훈 외(2017) 등은 광의, 협의, 최협의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세외수입을 정의하고 있음
  - 지방세외수입을 각각의 포괄범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명하면 먼저, 최광의의 세외수입은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지방세를 제외한 모든 세입을 의미, 둘째, 광의의 세외수입은 최광의의 세외수입 중 정부 간 이전수입,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지방세 수입을 제외한 지방재정 통계상의 세외수입을, 셋째, 협의의 세외수입은 광의의 지방세외수입에서



당해 연도의 특별한 원인에 의해 세입이 이루어지는 잡수입, 지난년도 수입을 포괄하는 임시적 세외수입을 제외한 세외수입(재산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등 경상적 수입+특별회계의 사업수입), 마지막으로 최협의의 세외수입은 사업수입을 제외, 일반회계의 경상적 세외수입을 의미함

- 다음 그림은 지방세외 수입을 광의, 협의, 최협의 등 3단계의 구분에 따른 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과 사업수입은 실질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과 사업외수입의 경우는 명목상 세외수입으로 구분함



[그림 2-1] 지방세외수입의 구분

자료: 김대영·강민구·김민정(2014)

- 외국문헌에서 지방세외수입은 “User Charge and fee”로 표현하며 국내에서는 사용료·수수료에 해당된다는 논의가 있으나 이는 사용료·수수료에 국한된 게 아니라 수익자부담원칙 혹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정부의 공공서비스 가격의 형태로 대가를 지불하는 모든 정부의 수입을 의미한다고 지적함(주만수·주운현, 2015; 홍근석, 2015)
-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으나 실제 부과 징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200여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이재호, 2014)
  - 즉, 개별 법률로 각각의 수수료, 과태료, 부담금 등에 대한 규정, 항목별로 지방자치단체, 국가 중 어디로 귀속해야하는 지에 대한 분류가 어렵기 때문에 이는 주요 세외수입 항목의 성격과 근거법령에 따라서 접근해야하는 사항으로 지적하고 있음
  - 과태료의 성립요건과 부과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어(2007년 12월) 국가 및 지방세외수입을 불문 대부분의 과태료에 적용(마정화, 2015)
  - 그리고 「지방세외수입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세외수입금의 효율적인 징수 및 관리를 위하여 지방세외 수입 중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에 한정해서 약 80여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마정화, 2015)
- 지방세외수입의 분류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세수입과는 달리 지방세외수입의 경우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구체적이고 통일적인 절차가 마련되지 못하였다(김무열, 2016), 2013년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부과·징수 절차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음(마정화, 2015)
  - 물론 징수와 관련해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2013

년 8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체납 등에 관한 강제 징수절차 내용만 있어서 일반적인 부과 및 징수 절차 내용은 미비함

- 세외수입은 다양한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설정되기 때문에 관련 중앙부처가 다양하고, 수수료를 관리하는 부서 역시 다양하기 때문에 적절한 통합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통합적인 관리의 어려움으로 지적될 수 있음(배인명 외, 2015)

## 2. 지방세외수입의 분류 및 체계

- 세외수입은 수입의 규칙성 및 안전성을 기준으로 할 때는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매년 계속·반복적으로 확보되는 수입(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 사업장,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을 말하며, 후자는 회계연도별 정례적인 수입이 아닌 특수한 여건에 따른 불규칙적인 수입(재산매각수입, 이월금, 기부금, 전입금, 부담금, 용자금 회수수입 등)을 말함(이재호, 2014)
- 또한 지방세외수입은 회계 구분에 따라 일반회계(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특별회계(사업수입, 사업외수입)로 구분되며, 이는 예측가능성, 안정성, 그리고 세입의 내용에 따라 각기 세분화됨(최원구, 2015)
  - 특별회계의 세외수입은 지방공기업과 관련된 수입이 주를 이루며 공영개발, 상수도, 구획정리, 병원 수입 등과 같은 사업수입과 이월금, 전입금, 그리고 용자금 수입과 같은 사업 외 수입으로 구분됨(이재호, 2014)
- 2018년 기준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지방세외수입의 세입과목이 장·관·항·목별로

각각 1개, 2개, 11개, 47개로 구성되며 다음 [표 2-1]와 같이 정리하였음

**[표 2-1] 현행 세외수입의 분류**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100 지방세수입(이하 생략)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1 재산임대수입			
		211-01 국유재산임대료	1.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유 토지·임야·건물임대수입
		211-02 공유재산임대료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및 관련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는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2. 기타 특별회계의 이용료·실습수입·임대료 등 기타 재산 수입
212 사용료수입			
		212-01 도로사용료	1. 도로사용료 수입
		212-02 하천사용료	1. 하천사용료 수입
		212-03 하수도사용료	1. 하수도사용료 수입
		212-04 상수도사용료	1. 상수도사용료 수입
		212-05 시장사용료	1. 공설도매시장 및 가축시장 사용료 수입
		212-06 도축장사용료	1. 도축장사용료 수입
		212-07 입장료 수입	1. 운동장, 공연장 등 입장료 수입 2. 기타특별회계의 영조물입장료 수입
		212-08 기타 사용료	1. 공원, 운동장, 묘지, 복지회관, 시민회관 등의 공공시설 및 재산의 사용료 수입 2. 기타특별회계의 온천급탕, 증기 사용, 주차장사용 등 사용료 수입 3.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사용료 수입
213 수수료수입			
		213-01 증지 수입	1. 자치단체 수입증지 판매 수입
		213-02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입	1. 자치단체가 쓰레기처리봉투를 판매한 수입
		213-03 재활용품수거판매 수입	1. 자치단체가 쓰레기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판매한 수입
		213-04 기타 수수료	1.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수료 수입
214 사업 수입			
		214-01 사업장 생산 수입	1. 사업장의 생산물 및 부산물 매각 수입
		214-02 주차요금 수입	1.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 의한 요금 수입
		214-03 통행료 수입	1.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도로통행료 수입

		214-04 청산금 수입 214-05 분담금 수입 214-06 매각사업 수입 214-07 배당금 수입 214-08 의료사업 수입 214-09 기타사업 수입	1. 환지청산금 수입 1. 공사완료지구 분담금 수입 1. 주택택지 공업용지 생산품 등 매각 수입 1. 공사 등 출자금에 대한 이익배당금 수입 1.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의 운영 수입 1.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사업 수입
		<b>215 징수교부금 수입</b>	
		215-01 징수교부금 수입	1. 시도세 징수에 따른 교부금 수입 2. 사용료 징수에 따른 교부금 수입 3. 수수료 등 징수에 따른 교부금 수입 4. 부담금 등 징수에 따른 교부금 수입
		<b>216 이자 수입</b>	
		216-01 공공예금이자 수입	1. 공공예금이자 수입
		216-02 민간용자금회수 이자 수입	1. 민간용자금에 대한 이자 수입
		216-03 통화금융기관 용자금회수 이자 수입	1. 통화금융기관 용자금에 대한 이자 수입
		216-04 공사·공단 등 용자금회수 이자 수입	1. 공사공단 용자금에 대한 이자 수입 2. 출자출연기관 용자금에 대한 이자 수입
		216-05 시·군·구 용자금회수 이자 수입	1. 시·군·구 용자금에 대한 이자 수입
		216-06 기타이자 수입	1.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 수입 2.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반납 수입
		<b>220 임시적 세외수입</b>	
		<b>221 재산매각수입</b>	
		221-01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1.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매각을 위임받은 국유재산(토지, 건물 등) 매각수입증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
		221-02 시도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	1.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로부터 매각을 위임받은 시도유재산 (토지, 건물 등) 매각수입증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
		221-03 공유재산 매각	1.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매각계획에 따른 유재산 매각

	수입금	수입 2. 공유재산과 타인재산의 교환차액 수입
	<b>222 부담금</b>	
	222-01 자치단체간 부담금	1. 자치단체간의 부담금 수입
	222-02 일반 부담금	1. 민간인·기타단체의 부담금 수입 2. 개발이익 환수금 3. 기타 특별회계의 · 주차장법 제8조에 의한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부과 수입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관련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금 수입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한 부담금 수입 4. 교육비특별회계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부담금 수입
	<b>223 과징금 및 과태료 등</b>	
	223-01 과징금	1. 자동차운송사업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등 2. 기타 특별회계의 주차장법 제24조의 2에 의한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 중 ① 벽지노선 운행 결손보전 해당액 ② 교통안전시설 확충해당액 3. 자동차관리법 제87조에 의한 범칙금 수입
	223-02 이행 강제금	1. 건축법 등 법령위반 이행 강제금
	223-03 변상금	1.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하거나 변상명령에 의하여 변상되는 수입
	223-04 위약금	1. 약정위반으로 인한 위약금수입
	223-05 과태료	1. 주민등록법 등 법령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2. 기타 특별회계의 주차장법 제30조에 의한 과태료 및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에 의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3. 기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b>224 기타수입</b>	
	224-01 불용품 매각대금	1. 불용품의 매각수입

		224-02 체납처분수입	1. 체납처분으로 생기는 수입
		224-03 보상금 수납금	1.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에서 수납하는 보상금 2. 콘돔 및 피임약 위탁판매 수수료 수입
		224-04 시·도비 반환금 수입	1. 시·도에서 전년도에 시·군·구에 보조한 시·도비 보조금중 시·군·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도비 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
		224-05 기부금	1. 용도지정 기부금 수입
		224-06 그 외 수입	1. 기타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2. 기타 특별회계의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수입 3. 지방자치단체 금고 출연 등 협력 사업비 4. 지역상생발전기금(재정지원계정)지원금
		<b>225 지난연도수입</b>	
		225-01 지난 연도 수입	1.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사용료 등 세외수입

자료: 안전행정부(2017).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3. 지방세외수입의 특징

- 지방세외수입은 자치단체에 있어서 중요한 수입원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과 비교하여 그 특징을 구분함
  - 주운현(2008), 고승희 외(2016), 홍근석(2015), 진희원(2015), 이재호(2014), 고승희 외(2015), 이상훈 외(2017), 최원구·김진아(2016)의 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세외수입의 특징을 5가지로 정리하고자 함
- 첫째, 세외수입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한 비교적 자유로운 영역으로 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지속적인 수입의 확대 및 개발이 용이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잠재적 수입원이 될 수 있음
- 둘째, 세외수입은 종류가 매우 많고 그 수입근거, 징수형태, 수입절차, 요율책정 근거 등 몹시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음
  - 수입의 근거를 보면 법률, 부령, 조례, 그리고 사법상 계약 등 다양하

고 종류에 있어서도 역시 행정서비스의 수반에서 비롯되는 사용료·수수료, 경제활동에 의한 재산임대수입 및 사업수입, 그리고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생기는 전입금, 회계연도의 단년도주의에 따라 발생하는 경리기술상 수입인 이월금 등 다양하게 있음

- 아울러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부담자와 비부담자의 성격, 요율 책정에 대한 합리적 근거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함 (홍근석, 2015)

○ 셋째,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발굴되어지는 수입이긴 하지만 그 수입원의 법적 근거에 따라 사용되는 곳이 특정되어 있기도 함

- 하천사용료는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비용, 공원사용료는 공원의 보전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특정세외수입은 특정세출예산과 직결되는 경우가 있음

○ 넷째, 세외수입은 징수형태로 현금으로 징수(금고납부)하는 것 외에 수입증지, 금권으로 징수하기도 함

- 여기서 수입증지나 금권은 주로 그 건당 수입액이 영세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등이 징수 시 이용되며, 최근 수수료 현실화계획에 따라서 점차 고액 권종화(券種化)되고 있는 실정임(김대영, 2014)

○ 다섯째, 세외수입은 주로 특정인의 공물사용 및 역무제공 등에 대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이기 때문에 조세와는 달리 국민의 저항이 비교적 적게 나타남

- 이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아무런 대가없이 국가의 재정권에 의해 징수되는 지방세에 비해 주민들의 저항이 적다는 의견임(이상훈 외, 2017)
- 최근 과태료나 과징금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의견이 제기되는 등 조세저항이 다소 강해지고 있음(오종탁, 2015)



## 제2절 지방세외수입의 제도변화<sup>1)</sup>

### 1. 1950년대 이전 시기

- 세외수입은 고종 32년(1885년) 4월 5일자 칙령 제71호「수입예규」에서 ‘조세외수입’이란 용어로 조세수입과 구분함
  - 예규에 따르면 “관유재산수입, 관업수입, 몰수금, 벌금, 환약금과 기타 국고에 수납함이 가한 수입금 등으로 법률, 칙령 또는 구 관행에 따른 토지, 호구, 제반영업 및 물건 등에 부과, 국고에 수납하는 조세외에 제수입”을 지칭함

### 2. 1950·60년대 전쟁 전·후 시기의 세외수입

- 일제강점기 이후, 1951년 지방세외수입은 ‘사용료 및 수수료, 재산수입, 기부금, 교부금, 전입금, 이월금, 재산매각대금, 과년도 수입, 지방채 및 잡수입’ 등 10종으로 구분했음
  - 1950년대는 전쟁의 수행 및 전후 시기였기 때문에 전쟁이후에야 국가위임사무, 주민복지에 관한 사무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지방의 기능이 보다 중요해졌음
- 이후 1961년 세제개혁이 단행되었으며 이듬해 1월, 내무부에 지방세과가 생기게 되면서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으나 그 규모에서는 영세성이 있었음

---

1) 세외수입의 제도변화와 관련해서는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2017)의 자료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였으며, 홍근석(2015), 고승희 외(2015), 이상훈 외(2017)의 연구를 추가하여 보강하였음을 밝힘

- 지방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에 대한 주민의 조세저항의 우려와 지방세로 인한 재정확충은 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 소유의 재산관리, 공영 및 공기업의 경영, 그 밖에 사용료·수수료 등의 수입을 통한 자원확보에 관심을 가짐(이상훈 외, 2017)
- 1962년부터 별도로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했으며 1996년에 특별회계 수입을 사업수입, 사업외수입으로 각각 구분했을 뿐 아니라 잡수입에 포함된 사업장 수입과 이자수입을 잡수입으로부터 분리·구분함(홍근석, 2015).

### 3. 1970·80년대 개발시대 세외수입

- 1970년대에 와서 세외수입에 대한 업무체계가 본격화되었으며 1970년 3월 14일에 내무부 칙령 제179호로 내무부 지방세과에 세외수입계가 설치, 동년 5월 20일에 시·도에도 역시 각 재정과에 세외수입계가 설치되었으며 1972년에는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에서 사용료와 수수료가 분리되었음
- 특히, 1970년대에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토지공개념 도입의 제기와 함께 각 자치단체별로 단순 보편적 세외수입에서 발상의 전환을 모색하는 등 경영수입사업이 등장하게 됨(강·하천의 모래자갈·채취사업 등 추진)
- 1980년대에는 경영수입사업에 대한 관심이 보다 높아지게 되었는데 이는 지속적인 재정수요의 증가와 경직된 지방의 세원으로 인하여 세입증대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경영수입사업과 같은 세외수입의 확충을 통한 재정확충을 모색한 계기가 됨
- 1988년 올림픽이 개최되던 시기에는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공영 개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작했고 이를 위해 각 시도(11개 시도)를 중심으로 공영개발사업을 전담할 사업단 설치와 관련 자치법 규를 정비함

- 1984년에 징수교부금을 교부금 수입에서 분리·구분, 1988년 5월 1일 직할시에 자치구 설치, 자치구 조례 12건을 제·개정함

## 4. 지방자치시대의 세외수입(1990년대-최근까지)

### 1) 제1기(1991-1997년 이전)

- 지방자치가 부활한 시기인 1991년에서 1997년 이전까지는 지방세외수입의 현실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지 않던 시기로 규정되고 있음(고승희 외, 2015)
  - 즉, 지방의 재정적 열악성으로 인해 학계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긴 했으나 사용자·수수료의 현실화와 관련된 본격적인 논의는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면서부터 보다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지적임(고승희 외, 2015)
- 1991년은 지방의회가 다시 부활되던 시기로 공영개발과 제 3섹터(민관 공동출자) 방식이 도입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중앙정부(내무부)에서 주관하던 사용자·수수료의 요율 조정권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이상훈 외, 2017)
- 이후 1993년 8월에는 한전 및 전기통신공사로부터 도로 점·사용료를 징수했고,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1996년에서 1999년까지)을 수립해 사용자와 수수료를 현실화시킴(홍근석, 2015)
  - 이 시기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을 통해 사용자 수입의 주를 이루던 도로 점·사용료의 징수 근거를

- 마련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음(이상훈 외, 2017)
- 1995년 6월에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 시기에 장기간 미조정되어 있던 사용료·수수료의 현실화와 관련된 계획이 수립하였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시도에 개선하도록 하였고 이후 연차별(1996~1999년)로 사용료·수수료에 대한 현실화 및 유료화 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되었음

## 2) 제2기(1997-2002년)

- 경영수입사업 이 외에 사용료·수수료의 요율 현실화에 대해 고민했던 것은 1995년부터인 것으로 판단됨
  - 1995년 3~6월까지 지방자치단체별 사용료·수수료에 대한 기초조사 및 원가분석을 실시(수수료 1,056종, 사용료 486종) 하였으며 그 종류가 총 1,542로 원가보상율이 대략 57% 수준임(이상훈 외, 2017)
  - 아울러 중앙에서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 829종 중 588종에 대해 수수료의 징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물가와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연차별로 사용료·수수료에 대한 현실화 및 유료화 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되었으며 이후 2002년까지 원가의 80% 수준까지 보상율을 현실화하기 위해「사용료·수수료 현실화 계획」을 수립함(고승희 외, 2015)
- 2000년부터는 경영수입사업을 보다 다각화하기 위해 지역의 유·무형 자산을 활용하여 향토지적자산을 중점적으로 육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함
- 2001년에는 성과분석을 통한 경영수입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경영수입사업 수지분석 매뉴얼을 개발·보급 적용하였으며, 2002년에는 전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세외수입정보 시스템을 개발하였음(2003년 본격적인 보급, 2005년 224개 기관에 구축)

- 2004년에 기존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보완해 자치단체 간 정보공유 및 관련 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전국통합시스템을 구축함

### 3) 제3기(2003-2007년)

- 2003년 제3기는 재정분권이 강조된 시기로서 세외수입과 관련된 정책 변화가 기대되었던 시기임
  -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연구기능 강화(연구모임 구성 운영), 세외수입 우수사례 공유, 상호벤치마킹이 가능하도록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개최 등
- 2004년에 법무부에서 입안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해 자치단체 의견의 적극반영, 징수율이 40% 이하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 제고 노력(자진납부제, 신용정보 등록, 인터넷 납부 방안)
- 2005년 세외수입의 현실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실태조사, 원가분석 등을 실시(288개 수수료), 14개 관련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법령 및 조례정비 권고, 부처의 협조하에 수수료 현실화 추진 노력했으며 2006년 주요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2006년 1월 1일 「지방자치법」 제139조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수수료 표준요율규정」을 제정 근거를 마련, 동년 6월 29일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의해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편차가 심하고 원가 이하로 운영된 주요 수수료의 현실화를 도모함
  - 2006년 6월 9일에 ‘세외수입 발전기획단’ 구성, 세외수입 관련 제도 및 정보화 전반에 대한 기반마련, 그 결과물로「세외수입 전산징수부 운영지침」,「과오납부 처리지침 확정」, 그 이외 세외수입 실무매뉴얼(안), 세외수입 관련 서식 정비(안) 마련
-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근거하여 수수료 표준 요

을 규정을 5종에서 16종으로 확대 공포해 수수료의 전국적 통일화, '세외수입 혁신추진단'을 구성해 세외수입 현안사안을 연구·토론을 통해 세외수입의 실무운영에 기여함

#### 4) 제4기(2008-2012년)

- 2008년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노후화된 기능 향상을 위한 정보시스템 고도화 계획수립 추진, 동년 6월 22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어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로 부과·징수 및 재판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 이행확보 계기가 됨
- 2009년에 가상계좌 도입, 신용카드 납부 등 민원편의를 위한 납부시책 확대 및 미수납액 징수대책 수립시행으로 자주재원확충 기여함
  - '세외수입 성과기획단'을 통해 세외수입 실무책자 발간 및 실무운영에 기여함
- 2010년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C/S기반에서 Web기반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착수해 7개 시범기관에 시스템 구축 2011년에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완료하여 전자납부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
  -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근거 수수료 표준요율 규정을 15종에서 27종으로 확대 공포해 지역적인 특성을 덜 고려해도 되는 단순 증명교부 사무에 대한 수수료의 전국적 통일
  -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시 이자를 지급토록 해 국민의 재산권 확충보장,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 관련 과태로 체납차량에 대한 변호판 영치 및 소유권이전등록 제한 등 과태로 징수율 제고
- 2012년에는 지난 60여 년 간 민원수수료 납부 시에 사용되어온 종이 수입증지를 민원불편해소, 부정부패 방지차원에서 폐지함
  -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근거해 수수료 표준요율 규정을 27종에서

182종으로 확대하여 지자체간 수수료의 형평성을 제고함

## 5) 제5기(2013-2016년)

- 2013년에는 무엇보다 「지방세외수입 징수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독촉 등 체납절차,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체납자대금 지급 정지 등의 제제수단, 과세자료 제공 등을 명문화하는 일반법을 마련
- 「지방세외수입 징수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이 2014년 8월 7일에 시행됨에 앞서 지방세외수입의 체계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역할로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에 지방세입정보과 신설(14년 4월 1일)
  - 세외수입의 납부편의를 위해 간단 e납부 서비스 확대 및 시행을 통해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하수도 요금 등을 고지서 없이 은행 ATM, 신용카드 등을 활용해 납부 가능하게 함
  - 이와 함께 2013년도 7월 29일자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2014년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 편성 시 세입예산과목 구분의 변경을 통하여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 원금, 전입금, 예수금 및 예탁금 등 별도과목으로 신설되어 세외수입 항목에서 제외됨
- 2015년은 세외수입 전담조직 독려를 위한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담조직이 설치되어 자치단체수가 139개로 큰 증가세를 보였으며,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을 도입함
- 2016년에는 「지방세외수입 징수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의 개정(2016년 5월 29일)을 통해 체납행위와 관련된 사업의 허가를 거부하거나, 고액의 지방세외수입금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기 위한 간접강제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1995년 이후에 대다수의 지방자치 단체들은 재원확충을 위하여 사용자부담금(user charges)의 성격을 가진 세외수입(특히, 경상세외수입)의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임
- 세외수입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크게 지방재정 증대를 위한 세외수입 확충에 관한 연구, 실무운영 및 법적·제도적 개선의 연구,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특히, 사용료·수수료를 중심으로 효율의 현실화 수준을 파악한 연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세외수입과 사용료·수수료를 제외한 기타 세외수입과 관련된 상·하수도 요금의 얼마나 합리적 인지과 관련된 연구 등이 진행된 바 있음
- 먼저, 세외수입 확충과 관련된 연구로는 이환범·권오규(2002), 강종규·김언호(2007), 신두섭(2008), 주운현(2008), 조임곤·이상훈(2013) 등이 있음
  - 이환범·권오규(2002)는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근거로 세외수입 증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세입구조의 불건정성, 요금수준의 비현실성, 비합리적인 징수체계,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낙후된 지역 등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서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재산임대수입 분야에서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음을 지적함
  - 강종규·김언호(2007)는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을 연구하였고, 세외수입의 확대를 위해서 무엇보다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지원노력이 필요하며, 공기업의 경영합리화, 이자수입의 확대, 그리고 사용료·수수료의 효율현실화, 축제 등 지역상품의 개발, 업무 통합시스템의 구축 등 징수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함
  - 신두섭(2008)은 세외수입원의 증대를 홈페이지 광고매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무엇보다 지역의 주성장 업종에 대한 홍보를 강



조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온라인 광고상품 기획, 개발을 위한 동영상 개발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함

- 주운현(2008)은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대안으로 세외수입이 주요 연구대상이 되어야함을 지적하였으며 무엇보다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해서는 재산임대수입 증대, 분담금 및 부담금제도의 활용, 무료수수료의 유료화, 그리고 사용료·수수료의 합리적인 요율을 도출하는 게 주요하다고 지적함
- 조임곤·이상훈(2013)은 지방정부차원에서 세외수입의 현황을 파악, 경상적 세외수입을 중심으로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의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본 후 종로구의 상세한 사례조사를 토대로 세외수입 확대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정리함
- 둘째, 실무행정상의 합리적 개선, 법적·제도적 개선(체납처분 절차 등)에 관한 연구는 임상수 외(2014), 김대영·강민구·김민정(2014), 홍근석(2015), 마정화·유현정(2015), 배인명·조임곤·박정수(2015), 주만수 외(2015), 최원구·김진아(2016), 허원·김필현(2016), 이상훈·사명철(2016), 김무열·마정화(2016), 이상훈 외(2017), 김진욱·김진태(2018) 등이 있음
- 임상수 외(2014)는 경기침제로 인해서 세입기반이 악화되어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세출 역시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방세외수입의 문제점 파악, 효율적인 세외수입 운영을 위한 운영진단제도 지표 등을 개발해서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세입기반을 강화하는데 기여함
- 김대영·강민구·김민정(2014)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령체계가 정비되었고 이를 계기로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 지방세외수입징수체계 개선을 위해 지방세외수입 징수 절차, 담당조직, 인력, 절차, 그리고 세입정보시스템 구축 등 효율화 방안을 제시함

- 홍근석(2015)의 경우 대구·경북의 자체재원의 확충에 기여하고자 세외수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함
- 마정화·유현정(2015)은 지방세외수입법상에서 지방세외수입의 징수 효율화를 위한 연구로서 가산금 규정, 출국금지, 우선순위 등 간접제재, 압류 효력의 연장 등 절차적 규정을 검토해서 지방세외수입법의 정비 방안을 제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배인명·조임곤·박정수(2015)는 세외수입의 관리에 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새올행정정보시스템, 각 지자체별 업무시스템 등으로 분산된 시스템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연구를 수행함
- 주만수 외(2015)는 신규 지방세외수입의 발굴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준칙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기존세외수입 사례들의 준칙과 일치정도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차후 신규세외수입의 발굴의 효율적인 사례가 되도록 연구를 수행함
- 최원구·김진아(2016)는 지방세외수입에서 세입예산 과목을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인 정비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새로운 지방세외수입 세목 분류 코드 부여방식 도입, 세목 분류 코드 부여방식에 대한 구체적 매뉴얼 작성,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설정내역의 구체적 작성, 당해연도 수입과 지난연도 수입의 구분방식 확대, 주기적인 세목 현황 및 시스템 점검을 통한 후속관리 등의 조치를 제안함
- 김무열·마정화(2016)는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 담당부서의 업무 효율성 증대, 통일성, 그리고 부과 및 징수절차에 있어서 주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찾고자 지방세외수입조례 제정의 가능성 검토, 조례제정이 불가능할 시 그 대안을 찾는 연구를 수행함

- 이상훈·사명철(2016)은 우리나라의 지방세외수입의 증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재정규모의 확충과 관리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6가지 전략 (사용자부담금의 효율현실화, 경상적 세외수입을 중심으로 하는 신규 수입원의 발굴,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 지방세외수입 총괄조직 신설 및 전담인력 확충, 지방세외수입 업무 시스템의 통합, 지방세외 수입의 분류체계와 구분 방식개선) 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음
- 허원·김필현(2016)은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절차를 국세징수법을 준용해 둘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 관계규정을 독자적으로 방식, 국세징수법의 준용에 있어서 범리, 입법, 행정적 측면, 지방 세외수입의 편의성 등을 비교·검토함에 따라 바람직한 입법론적 개선 방안을 제시함
- 이상훈 외(2017)는 지방세외수입이 주요한 재원조달의 기능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합리적 운용을 위해 총괄추진체계의 도입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김진욱·김진태(2018)는 울산시를 중심으로 세외수입의 결정유형 체계 및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그 중 지방세외수입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중에서 일정금액으로 명시되는 경우 환경변화에 대응이 미비해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수입의 현실화를 위해 조례에서 규칙으로 세부적 사용료 금액을 위임하는 방식의 법체계 정비를 논의 하고 있음
- 셋째, 실무행정상의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사용료·수수료의 원가 분석과 함께 효율의 현실화에 관한 연구는 이세구·안주희(2004), 김종순·주운현(2005), 주운현(2006), 주운현(2008), 고승희 외(2015; 2016), 조임곤(2016)
- 이세구·안주희(2004)는 서울시의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해 세외수입 중에서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재검토하고 이에 대한 적정 현실화율을 달성하도록 표준원가를 제시하여 보다 합리

적인 효율의 현실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함

- 주운현(2006)은 자치단체의 재원확충을 위한 연구로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인 수수료의 효율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현행 수수료의 효율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원가분석을 통한(활동원가기준, ABC: Activity-Based Costing)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
  - 주운현(2008)은 단식부기와 비교해 단식부기에서 집계 않은 세출에 대한 부분을 복식부기 제도와 복식부기 전산시스템에서 산출된 수치를 활용해 공공도서관 사업의 운영에 대한 원가를 분석하였으며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사업원가를 비교·분석하였음
  - 김종순·주운현(2009)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징수하는 전주점용료가 도로관리 및 도시미관을 정비하는 최소비용에도 미치지 못한 정액제의 단점(현행 전주점용료 산정기준의 문제점 등)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여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점용료 산정을 중심으로 현실화 방안을 제시함
  - 고승희 외(2015)는 천안시를 중심으로 53종의 세외수입 항목에 대해 기초자료의 제공가능성과 원가분석이 의미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통해 총 32개의 세외수입 항목을 선정, 이 중 분석이 가능한 대상의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요금의 현실화율을 파악함
  - 조임곤(2016)은 공공시설 중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원가분석체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표준수수료를 대상으로 투입되는 비용, 노력 정도에 따라 현재 설정된 표준수수료 금액의 효율이 어떤지를 검토하여 조정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실시함
- 마지막으로 전체 세외수입에 있어서 사용료·수수료를 제외한 경상적 세외수입 및 사업수입, 명목상세외수입인 임시적수입 및 사업외수입과 관련된 연구는 백승천(1996), 최근열(1997), 조형석·문상호(2007), 그리고 김길복·이선영·홍지영(2015), 김길복·이선영·곽명훈(2015) 등의 연구가 있음

- 백승천(1996)은 상하수도 사업의 경영성과, 재정상태, 요금수준 및 체계 등을 중심으로 그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 그에 상응하는 수익증대, 비용절감, 조직 및 인력강화, 책임경영체계의 확립을 지적하였음
  - 최근열(1997)은 상수도사업에 있어서 요금결정의 합리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요금수준 및 체계에 대한 실태분석을 실시하여 총괄원가산정방법의 개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성을 확보, 그리고 서비스 원가주의에 근거 단일요금제 채택 및 계절요금제의 선별적 도입을 제시함
  - 조형석·문상호(2007)는 지방 직영기업의 하수도 사업의 경우 많은 적자 발생과 함께 경영개선이 매우 시급한 상황에서 상하수도사업의 상대적 효율성 평가와 비효율성의 집단에 대한 경영개선을 위한 벤치마킹 사례를 언급함
  - 김길복·이선영·곽명훈(2015)은 세종시를 대상으로 상수도의 요금수준을 분석하고 보다 적절한 요금 현실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적절한 인상안에 따라 상수도의 요금표를 작성하고 재정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였음
  - 김길복·이선영·홍지영(2015)은 세종시를 대상으로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서 행정자치부의 기준에 근거하여 상하수도의 경영합리화를 추진함에 따라서 총괄원가가 미치지 못하는 하수도 요금을 분석해 이에 따른 적절한 요금 현실화를 모색하는데 있음
- 선행연구 검토에서 볼 수 있듯이 세외수입과 관련된 연구는 법체계 및 운영상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수행된 반면, 세외수입의 원가분석을 통한 요금의 적정성 및 현실화를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 원가분석과 함께 세외수입의 요금 적정성 및 현실화 방안을 모색한 연구를 중심으로 [표 2-2]에 정리하였음

[표 2-2] 사용료·수수료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연도)	대상(지역)	주요내용
이세구·안주희 (2004)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및 자치구의 수수료 요율 재검토, 현행 수수료별 요율 격차가 있는 수수료를 대상으로 원가분석 실시, 활동원가 기준 계산방식(ABC)을 통하여 표준원가 산정
주운현(2006)	전체 자치단체를 위한 객관적 지표화	활동원가 기준 계산방식(ABC),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원가분석을 통해 현행 수수료 요율의 원가 비교, 실비 보상을 도출(활동소비시간 도출을 위해 성남, 파주, 오산시 담당자와 인터뷰 진행)
주운현(2008)	A시 도서관 (특정시의 도서관 선정)	복식부기 제도, 복식부기 전산시스템을 통해 산출된 수치를 이용, 사업별 원가분석을 실시해 단식부기와 비교(복식부기 회계처리에 근거해 자산취득, 비용지출 등 산정, 이를 통해 인건비, 운영비, 기타이전 비용 등 도출)
김중순·주운현 (2009)	A시 (특정 시 선정)	현행 전주점용료(갑지, 을지, 병지)과 점용료의 요율을 통해 산정된(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점용면적 × 사용료 비율 × 수정률)된 값을 비교
고승희 외 (2015)	천안시	천안시의 시설사용료 12세외수입 항목의 원가분석, 원가대비 수익금액을 비교해 요율현실화를 파악
조임곤(2016)	서울시 종로구 (사용료), 현행 182종 수수료조사 (102종 대상)	체육시설(종로구)을 중심으로 공공시설 원가분석,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의거 표준수수료 대상으로 투입비용 및 노력에 따른 수수료 요율 적정성 검토

- 본 연구는 세외수입 관련 요율 현실화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세종시만의 세외수입 요율 적정성을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그 차별성이 있으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세외수입을 요율 현실화를 위한 정책적 판단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음에 그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세종시의 세외수입 현황 분석

제1절 우리나라의 세외수입 규모

제2절 세종시의 세외수입 규모

제3절 세종시의 세외수입 사용료·수수료 현황 검토

# 3장





# 제3장 세종시의 세외수입 현황 분석

## 제1절 우리나라의 세외수입 규모

### 1. 세외수입 단체별 구성

- 우리나라의 세외수입 규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4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여 2016년에 28,689,573백만 원으로 집계됨
- 2016년 기준 세외수입은 광역·기초자치단체 모두 세외수입의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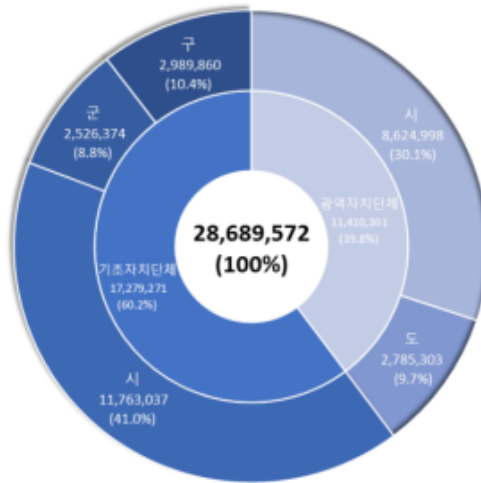
**[표 3-1] 세외수입 단체별 구성비**

(단위: 징수액(백만 원), 구성비(%))

연도	단체별 구성비	총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시	도	시	군	구
2007	징수액	65,734,838	16,831,449	9,791,350	23,490,324	10,385,494	5,236,221
	구성비	100.0	25.6	14.9	35.7	15.8	8.0
2008	징수액	67,947,818	17,106,170	8,910,550	24,822,284	10,881,270	6,227,544
	구성비	100.0	25.2	13.1	36.5	16.0	9.2
2009	징수액	72,906,399	17,823,208	8,541,391	26,626,722	12,555,120	7,359,958
	구성비	100.0	24.5	11.7	36.5	17.2	10.1
2010	징수액	59,877,959	15,542,957	8,099,894	20,898,470	9,062,702	6,273,936
	구성비	100.0	26.0	13.5	34.9	15.1	10.5
2011	징수액	58,330,065	15,378,654	8,912,464	19,909,478	8,789,659	5,399,810
	구성비	100.0	26.4	15.3	34.1	15.1	9.1
2012	징수액	66,180,254	17,644,666	10,117,804	23,063,817	9,527,944	5,826,023
	구성비	100.0	26.7	15.3	34.8	14.4	8.8
2013	징수액	72,607,629	20,146,108	10,782,522	24,850,383	10,895,980	5,932,636
	구성비	100.0	27.7	14.9	34.2	15.0	8.2
2014	징수액	23,378,364	7,460,012	2,690,698	8,758,668	1,954,109	2,514,877
	구성비	100.0	31.9	11.5	37.5	8.3	10.8
2015	징수액	26,563,012	7,879,567	2,636,585	11,067,876	2,370,381	2,608,611
	구성비	100.0	29.7	9.9	41.7	8.9	9.8
2016	징수액	28,689,573	8,624,998	2,785,303	11,763,037	2,526,374	2,989,860
	구성비	100.0	30.1	9.7	41.0	8.8	10.4

자료: 행정안전부(2017). 「2017년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 재구성

- 다음 [그림 3-1]에서 보면 세외수입의 비중은 광역자치단체가 39.8%, 기초자치단체가 60.2% 비율을 차지하며 각각의 단체별로 살펴보았을 때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단체는 기초시가 41.0%, 그 뒤를 이어 광역시, 구, 광역도, 군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 세외수입 단체별 구성비(2016년)

## 2. 지방세외수입과 지방세 규모 비교

- 지방의 자체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지방세 규모와 비교했을 때, 세외수입의 규모가 2013년까지는 지방세에 비해 그 비중이 높다가 2014년 이후 지방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 2016년 기준 72.5%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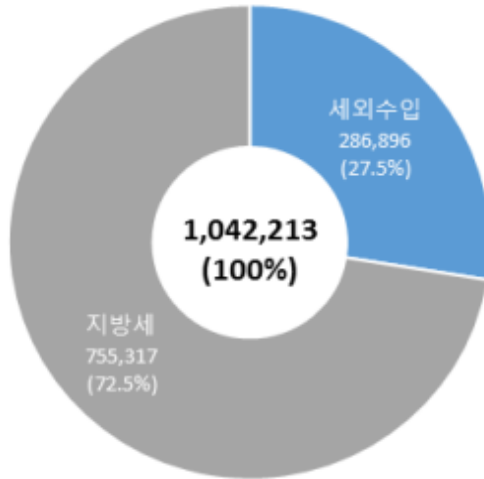
[표 3-2] 세외수입과 지방세 규모

(단위 : 억 원)

세입별 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비율%)	1,098,089 (100)	1,106,287 (100)	1,201,183 (100)	1,263,865 (100)	851,033 (100)	975,408 (100)	1,042,213 (100)
세외 수입 (비율%)	598,780 (54.5)	583,301 (52.7)	661,803 (55.1)	726,076 (57.4)	233,783 (27.5)	265,630 (27.2)	286,896 (27.5)
지방세 (비율%)	499,309 (45.5)	522,986 (47.3)	539,380 (44.9)	537,789 (42.6)	617,250 (72.5)	709,778 (72.8)	755,317 (72.5)

자료: 행정안전부(2017). 「2017년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 재구성

- 세외수입과 지방세의 비율을 [그림 3-2]와 같이 제시함



[그림 3-2] 세외수입과 지방세 규모(2016년)

- 회계별 신장추세를 나타낸 [표 3-3]을 살펴보면 2014년에 급격히 그 규모가 감소하게 되었는데(2013년 726,076억 원에서 2016년 286,896억 원으로 감소), 이는 일반회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과 특별회계 수입의 급격한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표 3-3] 회계별 신장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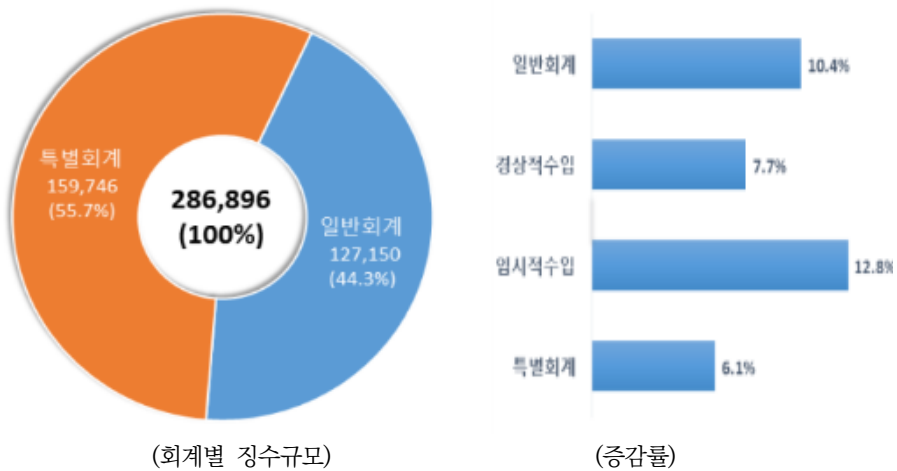
(단위 : 억 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598,780	588,301	661,803	726,076	233,783	265,630	286,896
일반 회계	소 계	305,204	282,350	336,605	386,961	108,221	127,150
	경상적 수입	42,313	43,985	47,120	50,358	49,366	53,093
	임시적 수입	262,891	238,365	289,486	336,603	58,855	69,976
특별회계	293,576	300,951	325,197	339,115	125,562	150,503	159,746

자료: 행정안전부(2017). 「2017년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 재구성

○ 다음 [그림 3-3]은 2016년 기준 회계별 징수금액의 비율을 보였으며, 특별회계의 비중이 55.7%로 일반회계 44.3%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고, 가장 증가율이 높은 것은 일반회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2.8%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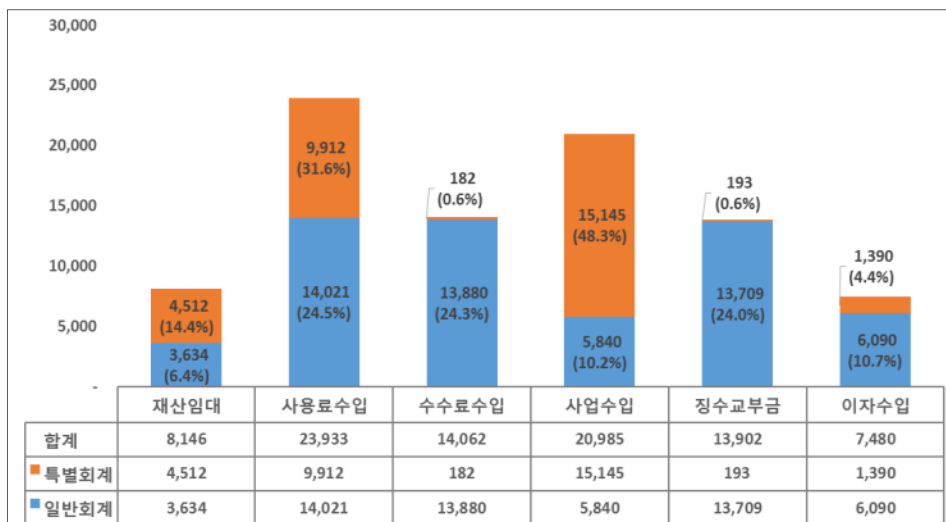
- 그러나 임시적 세외수입과 특별회계의 규모가 2014년에 급격하게 감소한 이후의 증가폭이므로 큰 의미를 발견하기는 힘들



[그림 3-3] 회계별 세외수입 징수규모와 증감률

- 2016년 기준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의 규모를 살펴보면 사용료수입의 규모가 23,933억 원으로 전체의 약 27%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어 사업수입이 20,985억 원으로 23.7%, 수수료수입이 14,062억 원으로 15.9%, 징수교부금수입이 13,902억 원으로 15.7%, 재산임대수입이 8,146억 원으로 9.2%, 이자수입이 7,480억 원으로 8.5%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회계의 경우 전체의 합계 수입과 같이 사용료수입이 14,021억 원인 2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며, 그 다음으로 수수료 수입이 13,880억 원인 24.3%로 나타남
  - 이에 반해 특별회계의 경우 사업수입이 15,145억 원으로 그 비중이 48.3%에 달하며 그 뒤를 이어 사용료수입이 9,912억 원으로 31.6%, 재산임대수입이 4,512억 원으로 14.4%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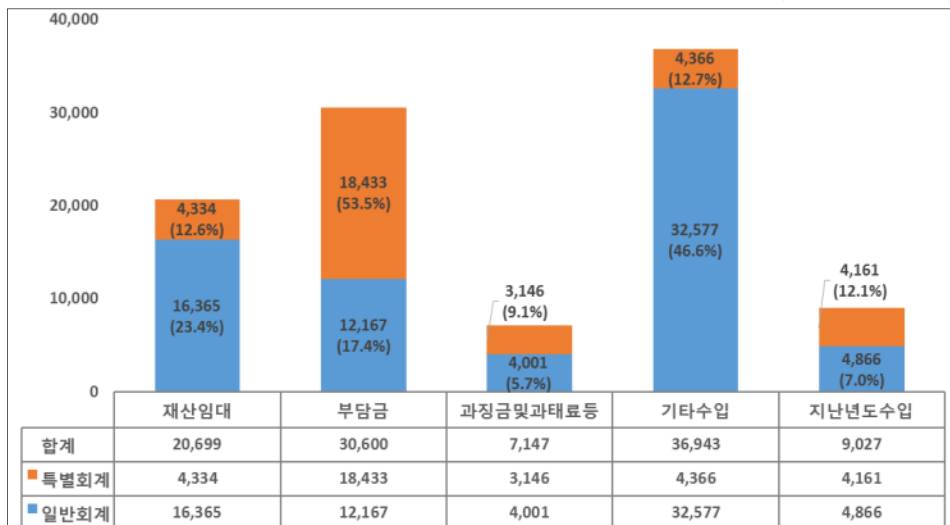


[그림 3-4] 경상적 세외수입 규모(2016년도)

자료: 행정안전부(2017). 「2017년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 재구성

- 2016년 기준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의 규모를 살펴보면 기타수입이 36,943억 원으로 전체의 약 35.4%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어 부담금이 30,600억 원으로 29.3%, 재산임대수입이 20,699억 원으로 19.8%, 지난해도수입이 9,027억 원으로 8.6%, 과징금 및 과태료가 7,147억 원으로 6.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의 경우 전체의 합계 수입과 같이 기타수입이 32,577억 원인 46.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며, 그 뒤로 재산임대수입이 16,365억 원으로 23.4%, 부담금이 12,167억 원으로 17.4%의 비중으로 나타남
- 이에 반해 특별회계의 경우 부담금이 18,433억 원으로 그 비중이 53.5%에 달하며 그 뒤를 이어 기타수입이 4,366억 원으로 12.7%, 재산임대수입이 4,334억 원으로 12.6%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억 원, %)



[그림 3-5] 임시적 세외수입 규모(2016년도)

자료: 행정안전부(2017). 「2017년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 재구성

- 다음 [표 3-4]는 시도별, 회계별 징수규모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총계,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경기도가 가장 높은 비중(27.6%)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이 18.0%, 인천 8.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경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한 징수규모는 79,131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보이며 일반회계 31,063억 원, 특별회계 48,068억 원으로 나타남
- 이에 반해 세종시는 합계 1,852억 원, 일반회계 362억 원, 특별회계, 1,490억 원으로 그 구성비가 0.6%로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가장 낮은 비중을 보임

**[표 3-4] 시·도별 회계별 징수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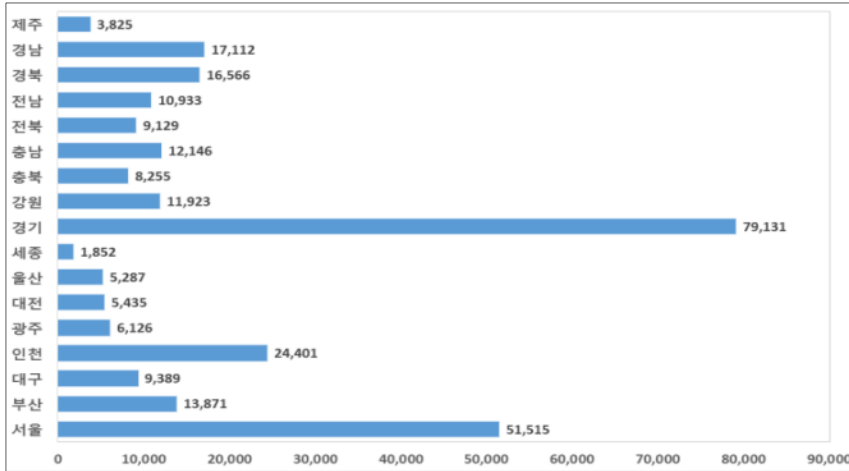
(단위 : 억 원, %)

구분	합계	구성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	286,896	100.00	127,151	159,745
서울	51,515	18.0	22,156	29,359
부산	13,871	4.8	5,516	8,355
대구	9,389	3.3	4,267	5,122
인천	24,401	8.5	9,621	14,780
광주	6,126	2.1	2,610	3,516
대전	5,435	1.9	2,356	3,079
울산	5,287	1.8	2,505	2,782
세종	1,852	0.6	362	1,490
경기	79,131	27.6	31,063	48,068
강원	11,923	4.2	7,929	3,994
충북	8,255	2.9	4,526	3,729
충남	12,146	4.2	5,459	6,687
전북	9,129	3.2	4,676	4,453
전남	10,933	3.8	6,121	4,812
경북	16,566	5.8	8,014	8,552
경남	17,112	6.0	8,030	9,082
제주	3,825	1.3	1,940	1,885

자료: 행정안전부(2017). 「2017년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 재구성



○ 다음 [그림 3-6]은 시·도별 세외수입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음



[그림 3-6] 시·도별 징수규모

## 제2절 세종시의 세외수입 규모

### 1. 세외수입 징수실적

- 다음 [표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종시의 세외수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징수결정액은 총 195,251백만 원이며 실제 징수액은 185,208백만 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징수액은 각각 36,244백만 원, 148,962백만 원으로 징수율은 전체 94.9%(일반회계, 84.7%, 특별회계 97.6%)로 나타남

[표 3-5] 세종시의 세외수입 징수실적(2016년)

(단위 : 백만 원)

	최종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징수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E=B-C-D)	징수율		
						(C/A)	(C/B)	
전체	145,235	195,251	185,208	28	10,017	127.5	94.9	
일반회계	16,736	42,781	36,244	28	6,509	216.6	84.7	
특별회계	계	128,499	152,470	148,962	-	3,508	115.9	97.6
	기타	20,846	46,476	44,990	-	1,486	215.8	96.8
	공기업	107,653	105,994	103,972	-	2,022	96.6	98.1

자료: 행정안전부(2017). 「2017년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 재구성

- 다음 [표 3-6]은 회계별 전년도 대비 징수액을 비교한 것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세목은 특별회계(기타) 임시적 수입의 기타수입이 635.7%, 특별회계(공기업) 사업외수입에서 상수도사업이 512.8%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반회계 경상적 세외수입의 사용료수입이 78.8%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음

- 이에 반해 감소율이 가장 큰 세목은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이 -57.1%, 특별회계(기타) 경상적 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이 -54.4%, 특별회계(공기업) 사업외수입에서 공영개발 사업이 -52.8%로 전년대비 그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했음

[표 3-6] 세종시 전년도 대비 징수액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16, 2015 징수액 대비						
	2016 징수액(A)		2015 징수액(B)		증감액 (C=A-B)	증감률 (C/B)	
회계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b>총계</b>	<b>185,208</b>	<b>100.00</b>	<b>168,086</b>	<b>100.00</b>	<b>17,122</b>	<b>10.2</b>	
<b>일반회계</b>	<b>36,246</b>	<b>19.6</b>	<b>25,523</b>	<b>15.2</b>	<b>10,723</b>	<b>42</b>	
경상적 수입	<b>소계</b>	<b>21,768</b>	<b>11.8</b>	<b>17,083</b>	<b>10.2</b>	<b>4,685</b>	<b>27.4</b>
	재산임대 수입	645	0.3	392	0.2	253	64.5
	사용료 수입	6,002	3.2	3,357	2	2,645	78.8
	수수료 수입	4,866	2.6	3,720	2.2	1,146	30.8
	사업 수입	1,420	0.8	1,241	0.7	179	14.4
	징수교부금 수입	441	0.2	345	0.2	96	27.8
	이자 수입	8,394	4.5	8,028	4.8	366	4.6
	<b>소계</b>	<b>14,478</b>	<b>7.8</b>	<b>8,440</b>	<b>5</b>	<b>6,038</b>	<b>71.5</b>
임시적 수입	재산매각 수입	363	0.2	847	0.5	-484	-57.1
	부담금	1,152	0.6	472	0.3	680	144.1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429	3.9	1,216	4.8	213	17.5
	기타 수입	10,521	5.7	5,276	3.1	5,245	99.4
	지난 년도 수입	1,013	0.5	629	0.4	384	61
<b>특별회계</b>	<b>148,962</b>	<b>80.4</b>	<b>142,563</b>	<b>84.8</b>	<b>6,399</b>	<b>4.5</b>	
<b>특별회계 (기타)</b>	<b>44,988</b>	<b>24.3</b>	<b>30,242</b>	<b>18</b>	<b>14,746</b>	<b>48.8</b>	
경상적 수입	<b>소 계</b>	<b>21,593</b>	<b>11.7</b>	<b>4,735</b>	<b>2.8</b>	<b>16,858</b>	<b>356</b>
	재산임대 수입	1,667	0.9	3,658	2.2	-1,991	-54.4
	사용료 수입	-	0	-	0	-	0
	수수료 수입	-	0	-	0	-	0
	사업 수입	19,062	10.3	-	0	19,062	0
	징수교부금 수입	-	0	-	0	-	0
	이자 수입	864	0.5	1,077	0.6	-213	-19.8
<b>소계</b>	<b>23,395</b>	<b>12.6</b>	<b>25,507</b>	<b>15.2</b>	<b>-2,112</b>	<b>-8.3</b>	
임시적	재산매각 수입	-	0	-	0	-	0
	부담금	21,562	11.6	24,094	14.3	-2,532	-10.5

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271	3.5	1,120	4.4	151	13.5
	기타 수입	103	0.1	14	0	89	635.7
	지난 년도 수입	459	0.2	279	0.2	180	64.5
<b>특별회계(공기업)</b>		<b>103,974</b>	<b>56.1</b>	<b>112,321</b>	<b>66.8</b>	<b>-8,347</b>	<b>-7.4</b>
사업수입	<b>소 계</b>	<b>78,853</b>	<b>42.6</b>	<b>65,185</b>	<b>38.8</b>	<b>13,668</b>	<b>21</b>
	상수도 사업	17,711	9.6	14,633	8.7	3,078	21
	하수도 사업	6,534	3.5	3,899	2.3	2,635	67.6
	지역개발기금	119	0.1	111	0.1	8	7.2
	공영개발 사업	54,489	29.4	46,542	27.7	7,947	17.1
사업외수입	<b>소 계</b>	<b>25,121</b>	<b>13.6</b>	<b>47,136</b>	<b>28</b>	<b>-22,015</b>	<b>-46.7</b>
	상수도 사업	3,027	1.6	494	0.3	2,533	512.8
	하수도 사업	131	0.1	154	0.1	-23	-14.9
	지역개발기금	1	0	-	0	1	0
	공영개발 사업	21,962	11.9	46,488	27.7	-24,526	-52.8

자료: 행정안전부(2017). 「2017년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 재구성

## 2. 세외수입 항목별 징수실적

- 세종시의 2016년 기준으로 세외수입 항목별 징수실적은 전체 185,208백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36,246백만 원, 특별회계(기타)가 44,988백만 원, 특별회계(공기업)가 103,974백만 원으로 집계됨
-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21,768백만 원, 특별회계(기타)는 21,593백만 원으로 나타남
  - 일반회계의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가장 징수규모가 큰 세목은 이자수입이 8,394백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사용료수입 6,002백만 원, 수수료수입 4,866백만 원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일반회계의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징수규모가 가장 큰 세목은 기타수입이 10,521백만 원이며, 과징금 및 과태료가 1,429백만 원, 부담금이 1,152백만 원 순으로 나타남
  - 특별회계(기타)의 경상적 수입은 사업수입이 19,062백만 원으로 가장

높은 징수규모를 보이며 재산임대료 수입이 1,667백만 원으로 높은 징수규모를 보여줌

- 특별회계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가장 징수규모가 큰 세목은 부담금으로 21,562백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과징금 및 과태료가 1,271백만 원으로 나타남

○ 특별회계(공기업)의 경우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으로 구분되며 이 중 사업수입의 경우 공영개발사업이 54,489백만 원으로 가장 높은 징수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상하수도사업이 17,711백만 원으로 그다음으로 높은 징수규모를 보임

- 아울러 사업외수입의 경우 공영개발사업이 21,962백만 원으로 가장 큰 징수규모를 보이며 그 뒤를 이어 상하수도사업이 3,027백만 원의 규모로 나타남

[표 3-7] 세종시의 항목별 징수실적(2016년)

(단위 : 백만 원)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기타)	특별회계(공기업)		
185,208		36,246	44,988	103,974		
경상적수입	소계	21,768	21,593	사업수입	소계	78,853
	재산임대료수입	645	1,667		상수도사업	17,711
	사용료수입	6,002	-		하수도사업	6,534
	수수료수입	4,866	-		지역개발기금	119
	사업수입	1,420	19,062		공영개발사업	54,489
	징수교부금수입	441	-	사업외수입	소계	25,121
	이자수입	8,394	864		상수도사업	3,027
임시적수입	소계	14,478	23,395	하수도사업	131	
	재산매각수입	363	-	지역개발기금	1	
	부담금	1,152	21,562	공영개발사업	21,962	
	과징금 및 과태료등	1,429	1,271			
	기타수입	10,521	103			
	지난년도수입	1,013	459			

자료: 행정안전부(2017). 「2017년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 재구성

- 세종시의 경상적 세외수입(일반회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자수입에 있어서 공공예금이자 8,197백만 원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재산임대수입에 있어서는 공유재산임대료가 645백만 원으로 주 수입원이 되며, 사용료수입에 있어서는 하천이 1,502백만 원, 수수료 수입에는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2,124백만 원, 사업수입에는 의료사업과 기타사업수입이 각각 844백만 원, 576백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 8,197백만 원으로 나타남

**[표 3-8]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실적(일반회계)**

(단위 : 백만 원)

합계		43,361	
일반회계		21,768	
<b>1. 재산임대수입</b>	<b>645</b>	<b>4. 사업수입</b>	<b>1,420</b>
가. 국유재산임대료	-	가. 사업 장생산수입	-
나. 공유재산임대료	645	나. 주차요금수입	-
<b>2. 사용료수입</b>	<b>6,002</b>	다. 통행료수입	-
가. 도로	312	라. 청산금수입	-
나. 하천	1,502	마. 분담금수입	-
다. 하수도	-	바. 매각사업수입	-
라. 상수도	-	사. 배당금수입	-
마. 시장	-	아. 의료사업수입	844
바. 도축장	-	자. 기타사업수입	576
사. 입장료	-		
아. 기타	4,188		
<b>3. 수수료수입</b>	<b>4,866</b>	<b>5. 징수교부금수입</b>	<b>441</b>
가. 증지수입	797	가. 징수교부금수입	441
나.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2,124		
다.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97		
라. 기타	1,848		
		<b>6. 이자수입</b>	<b>8,394</b>
		가. 공공예금이자	8,197
		나. 민간용자금회수이자수입	-
		다. 통화금융기관용자금회수이자수입	-
		라. 공사공단용자금회수이자수입	-
		마. 기타	197

자료: 행정안전부(2017). 「2017년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 재구성

- 세종시의 경상적 세외수입 특별회계(기타)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수입에 있어서 매각사업수입이 19,062백만 원으로 가장 큰 규모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음
  - 재산임대수입에 있어서는 공유재산임대료가 1,667백만 원,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공공예금이자 853백만 원으로 나타남

**[표 3-9]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실적(특별회계)**

(단위 : 백만 원)

합계	43,361		
특별회계 (기타)	21,593		
<b>1. 재산임대수입</b>	<b>1,667</b>	<b>4. 사업수입</b>	<b>19,062</b>
가. 국유재산임대료	-	가. 사업장생산수입	-
나. 공유재산임대료	1,667	나. 주차요금수입	-
<b>2. 사용료수입</b>	<b>-</b>	다. 통행료수입	-
가. 도로	-	라. 청산금수입	-
나. 하천	-	마. 분담금수입	-
다. 하수도	-	바. 매각사업수입	19,062
라. 상수도	-	사. 배당금수입	-
마. 시장	-	아. 의료사업수입	-
바. 도축장	-	자. 기타사업수입	-
사. 입장료	-		
아. 기타	-		
<b>3. 수수료수입</b>	<b>-</b>	<b>5. 징수교부금수입</b>	<b>-</b>
가. 증지수입	-	가. 징수교부금수입	-
나. 쓰레기처리비용투판매수입	-		
다.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		
라. 기타	-		
		<b>6. 이자수입</b>	<b>864</b>
		가. 공공예금이자	853
		나. 민간용자금회수이자수입	10
		다. 통화금융기관용자금회수이자수입	-
		라. 공사공단용자금회수이자수입	-
		마. 기타	1

자료: 행정안전부(2017). 「2017년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 재구성

- 세종시의 임시적 세외수입 일반회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타수입에서 그 외 수입이 10,479백만 원으로 가장 큰 규모의 징수실적을 보여줌
  - 재산매각수입에 있어서는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322백만 원, 부담금은 일반부담금이 1,062백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는 과태료가 1,035백만 원으로 나타남

[표 3-10]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실적(일반회계)

(단위 : 백만 원)

<b>합계</b>	<b>37,872</b>		
<b>일반회계</b>	<b>14,477</b>		
<b>1. 재산매각수입</b>	<b>363</b>	<b>4. 기타수입</b>	<b>10,520</b>
가. 국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	가. 불용품매각대	41
나. 시·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41	나. 체납처분수입	-
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	322	다. 보상금수납금	-
<b>2. 부담금</b>	<b>1,152</b>	라. 시도비반환금수입	-
가. 자치단체간부담금	90	마. 기부금	-
나. 일반부담금	1,062	바. 그 외 수입	10,479
<b>3. 과징금및과태료등</b>	<b>1,429</b>	<b>5. 지난해도수입</b>	<b>1,013</b>
가. 과징금및이행강제금	331		
나. 변상금및위약금	63		
다. 과태료	1,035		

자료: 행정안전부(2017). 「2017년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 재구성

- 세종시의 임시적 세외수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담금에서 일반부담금이 21,562백만 원으로 가장 큰 규모의 징수실적을 보여줌
- 과징금 및 과태료는 과태료가 1,271백만 원, 기타수입에서는 그 외수입이 103백만 원으로 나타남

[표 3-11]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실적(특별회계)

(단위 : 백만 원)

<b>합계</b>	<b>37,872</b>		
<b>특별회계 (기타)</b>	<b>23,395</b>		
<b>1. 재산매각수입</b>	<b>-</b>	<b>4. 기타수입</b>	<b>103</b>
가. 국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	가. 불용품매각대	-
나. 시·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	나. 체납처분수입	-
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	-	다. 보상금수납금	-
<b>2. 부담금</b>	<b>21,562</b>	라. 시도비반환금수입	-
가. 자치단체간부담금	-	마. 기부금	-
나. 일반부담금	21,562	바. 그 외 수입	103
<b>3. 과징금및과태료등</b>	<b>1,271</b>	<b>5. 지난해도수입</b>	<b>459</b>
가. 과징금및이행강제금	-		
나. 변상금및위약금	-		
다. 과태료	1,271		

자료: 행정안전부(2017). 「2017년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 재구성



### 제3절 세종시의 세외수입 사용료·수수료 현황 검토

- 세외수입 요율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각 부서별(세종시 22개 해당부서)로 사용료·수수료 수입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표를 받아 각각의 사용료·수수료를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여 [표 3-12]와 같이 제시함
- 이 중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상·하수도과에서 담당하는 수도사용료금, 공공상하수도사용료(2015년 연구용역과제로 보고서 발행), 버스요금 등은 공공요금으로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표 3-12] 해당 부서별 사용료·수수료 조사 결과

연번	부서명	제출대상 검토 조사표	
		사용료 조사표	수수료 조사표
1	총무과	○	-
2	생활안전과	-	○
3	치수방재과	○	-
4	자치행정과	-	○
5	여성아동청소년과	○	-
6	노인보건장애인과	○	○
7	경제정책과	○	○
8	투자유치과	○	-
9	농업축산과	-	○
10	건축과	-	○
11	도로과	○	○
12	교통과	○	-
13	환경정책과	-	○
14	도시청결과	-	○
15	상하수도과	-	○
16	산림공원과	○	-
17	보건소 보건행정과	-	○
18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	○
19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과	○	○
20	시설관리사업소 공원녹지과	○	-
21	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시설과	-	○
22	장군면	○	-

## 1. 세외수입 사용료 현황 검토

- 다음 [표 3-13]은 총무과, 치수방재과를 비롯한 총 12개 부서를 중심으로 세외수입의 사용료 현황을 보여주고 있음
- 즉, 12개의 목, 28개의 세목에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법적근거를 제시함

[표 3-13] 세외수입 사용료 현황

담당부서	목	세목	사용료 법적근거
총무과	기타사용료	부설주차장 사용료	세종특별자치시 청사 및 조치원 읍사무소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제5조
치수방재과	하천사용료	하천점 사용료 소하천점 사용료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별표1
		하천수 사용료	
		캠핑장 사용료	세종특별자치시 합강캠핑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여성아동청소년과	기타 사용료	여성회관 사용료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제5조
노인보건의장애인과	기타 사용료	장례식장 사용료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제2항, 제3항
		화장장 사용료	
		봉안자연장 사용료	
일자리정책과	기타 사용료	주차장사용료 (공사공단)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5호
도로과	도로사용료	계속도로점용료 일시도로점용료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3조
		공영자전거사용료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3항
경제정책과	기타 사용료	주차장위탁사용료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산림공원과	기타 사용료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11조

시설관리 사업소 시설 관리과	기타 사용료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민회관사용료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세종시민 체육관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 제1항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조치원 체육공원 테니스장	
		조치원 체육공원 축구장	
		전의면 체육공원 축구장	
		도담동 복합커뮤니티 센터	
		어진동 복합커뮤니티 센터	
		중촌동 복합커뮤니티 센터	
		고운동 복합커뮤니티 센터	
		보람동 복합커뮤니티 센터	
시설관리 사업소 도시 청결과	기타 사용료	수영장 사용료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2항
시설관리 사업소 공원 녹지과	기타 사용료	공원 사용료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10조
장군면	기타 사용료	작은 목욕탕 사용료	세종특별자치시 작은 목욕탕 운영 및 관리조례 제7조 제1항

## 2. 세외수입 수수료 현황 검토

- 다음 [표 3-14]는 예산담당관, 세정담당관, 생활안전과 등을 비롯한 총 22개 부서를 중심으로 세외수입의 수수료 현황을 보여주고 있음
- 즉, 34개의 목·세목 중 19개의 세목에서 175개의 수수료 종류가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법적근거가 제시하였음

[표 3-14] 세외수입 수수료 현황

담당부서	목	세목	수수료 종류	수수료 법적근거
예산담당관	증지수입	인증기용 증지	공유재산 대부신청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2조(징수구분)
세정담당관	증지수입	인증기용 증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
생활안전과	증지수입	인증기용 증지	공중위생영업 신고 및 변경신고, 승계신고, 폐업신고, 위생용품 제조업 및 제조업 변경신고,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2조(징수구분)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신청 및 변경등록신청,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
치수방재과	증지수입	인증기용 증지	소하천 점용 사용료 허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
문화체육관광과	증지수입	인증기용 증지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외 16건 <sup>2)</sup>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

자치행정과	증지수입, 기타 수수료	인증기용 증지, 기타 수수료	정보제공수수료, 정보이용수수료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2조(징수구분)
노인보건 장애인과	증지수입	인증기용 증지	장사시설관련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2조(징수구분)
			의료기관 개설 및 허가신청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
경제정책과	증지수입	인증기용 증지	석유판매업(일반 대리점·용제대 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외 29개 <sup>3)</sup>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
	증지수입	인증기용 증지	개설등록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2조(징수구분)
산업입지과	증지수입	인증기용 증지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신청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
	증지수입	인증기용 증지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증지수입	인증기용 증지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농업축산과	증지수입	인증기용 증지	낙시 어업신고 외 51건 <sup>4)</sup>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
	증지수입	인증기용 증지	가축 인공수정소 개설 신고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2조(징수구분)
	증지수입	인증기용 증지	가축 인공수정소 개설 변경신고	
건축과	증지수입	인증기용 증지	건축허가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제22조 제1항
	증지수입	인증기용 증지	광고물의 허가, 신고수수료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제46조 제1항
도로과	증지수입	인증기용 증지	사도개설 허가 및 변경 허가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2조(징수구분)

교통과	증지수입	인증기용 증지	운성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 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외 5건 <sup>5)</sup>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
토지정보과	증지수입	인증기용 증지	공인증개사자격 증의 재교부 외 10건 <sup>6)</sup>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
환경정책과	증지수입	인증기용 증지	분쟁신청수수료	세종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6조
	증지수입	인증기용 증지	설치허가(권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
시설관리 사업소(상 하수도시 설과, 환경정책 과)	수수료 수입	기타 수수료	가축분뇨처리수 수료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도시청결과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쓰레 기처리 봉투판매	중량제봉투판매	세종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 16조 2항, 17조 제1항
	기타 수수료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납부필증	세종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 16조 2항, 17조 제1항
	기타 수수료	대형 폐기물 판매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	세종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 16조 2항, 17조 제1항
상하수도과	수수료 수입	기타 수수료	분뇨수집·운반	세종특별자치시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보건소 보건행정 과	증지 수입	인증기용 증지	의료기관개설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2조(징수구분)
	증지 수입	인증기용 증지	간호조무사시험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2조(징수구분)
	증지 수입	인증기용 증지	근로자 및 일반건강진단서 외 9건 <sup>7)</sup>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증지 수입	인증기용 증지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신청 외 8건 <sup>8)</sup>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
농업기술 센터 미래농업 과	증지 수입	인증기용 증지	농업용 퇴비성분 분석 외 5건 <sup>9)</sup>	세종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시설관리 사업소 시설관리 과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재활용품 수거판매	재활용품판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기타 수수료	기타 수수료	고형연료판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 2)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일반게임제공업체 허가신청,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등
- 3)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
- 4)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정치망어업),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내수면어업허가, 내수면 어업신고, 내수면 어업 연장허가, 내수면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비료생산 등록, 비료수입업 신고, 어업면허 등
- 5)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 6)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개별도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 7) 체용신체검사서, 일반진단서, 특별진단서, 사체검안서, 성별 및 연령 감정서,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사망진단서, 출생·사산·사태 증명서, 운전면허신체(적성)검사서
- 8)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의료기관 개설 신고,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급
- 9)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분석, 농작물 식물체 분석, 객토원 분석, 오염분석, 오염분석

### 3. 세외수입의 문제점

#### 1) 세외수입의 신장성 저조

-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반복적으로 조달되어 안정성과 지속성(계속성)이 확보되는 수입임(이상훈·사명철, 2016)
- 그러나 세종시는 경상적세외수입보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의존도가 높은 특성을 보이는데 2014년에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액이 급감하여 세외수입의 총 규모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었을 뿐 아니라 경상적 세외수입 역시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지 않아 세수의 신장성이 매우 저조함
  - 세종시의 일반회계세입의 징수액 규모(2007년에서 2016년까지)는 평균적으로 약 10.4% 증감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회계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동년 대비 7.7%, 임시적 세외수입은 12.8%의 증감률을 보임

#### 2) 전담인력 및 체계적 조직 문제

- 우리나라의 각 광역자치단체를 보면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는 근거 법령에 따라 각 실과에 따로 배치되어 있으며 이를 총괄적으로 지방세외수입을 총괄하는 세무부서에 인력이 배치됨
- 세종시의 경우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담당인력이 4명으로 세외수입담당 총괄, 세외수입 채납액 일제정리, 세외수입 부동산 압류, 세외수입 체납관련행정제재, 세외수입결손처분, 특별회계 총괄 인력이 1명, 의존재원 등 세입, 과오납금,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세외수입전반과 관련된 인력이 각각 1명씩 배치됨
  - 세종시의 경우 세외수입의 관리 및 징수 인력 역시 각 실과에 분산배치되었으나, 그 인력도 적정인력이 배치되었다고 보기 힘든 현실임<sup>10)</sup>

10) 세종시의 세외수입 담당 부서의 인력은 2018년 9월 기준으로 세외수입담당 총괄계장을 비롯해 3명의 주무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해서 개별법령 및 자치단체의 조례 등이 약 200여 개나 되기 때문에 부과징수관리 업무는 개별부서에 분산, 지방세외수입의 결정, 수납액 세입관리, 통계 및 업무시스템 관리는 세무부서에서 총괄하는 상황으로 체계적인 조직 역시 매우 부족한 실정임

### 3) 평균 수지율과 원가보상율의 비합리적 격차

- 여러 연구를 통하여 지방세외수입의 문제점으로 공급원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요금수준을 지적하고 있음
  - 즉, 낮은 원가보상율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서비스에 대한 과잉수요, 자원의 낭비, 비효율적인 배분 등이 야기되며 적자보전을 위해 일반재원으로 충당하는 현실임(고승희 외, 2015)
-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낮은 원가에 대한 이유로는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인식부족, 규모의 영세성으로 주요관심에서 멀어지는 현실, 그리고 무엇보다 금액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용료·수수료(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각각 19.7%, 21.8% 차지)에 대한 공공요금인식으로 물가 및 공공요금의 인상억제와 연계되어 적절한 요율을 조정할 기회가 많지 않음을 제시함(김진욱·김진태, 2018)
  - 그 밖에 다른 이유로는 체계적 관리의 부족(징수근거법률, 조례 등 다양)을 지적하기도 함

### 4) 요율체계 미조정 및 불균형

- 사용료·수수료의 경우 징수근거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매우 힘든 실정임
  - 사용료·수수료의 규모가 그 동안 크지 않았기에 이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공공요금으로서의 인식이 강해 물가 및 공공요금의 인상억제와 함께 연계되어서 요금의 조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음(고승희 외, 2015)

- 지방세외수입의 요금과 관련한 다른 문제점은 요금체계의 불균형에 있으며 특히, 요금체계의 불균형은 동일·유사한 행정서비스(사용료·수수료 등) 문제는 관내 자치단체 내에서도 발생하고 있음

※ A광역시를 예로 들어보면 전기공사업의 등록신청 수수료는 1건당 4천원인데(「A광역시 제증명 등의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근거) 반해, 종합설계업 감리업의 등록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1건당 5천원에 해당하며, 이는 유사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수료가 합리적인 원가 계산 및 기준이 없이 결정되는 것으로 지적되기도 함

- 각 자치단체들은 개별적으로 조례를 제정·관리하는 권한이 있으며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따라 요금을 결정해야하기 때문에 차별성이 있는 것은 합당하나, 문제는 동일·유사한 행정서비스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는데 있어서 그 기준(산정비용 방식)이 근거 없이 이루어진 체계라면 요금의 형평성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김진욱·김진태, 2018)

- 이에 보다 합리적인 표준요금 체계를 확립해 자치단체간의 요금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5) 관련법규개정 및 원가분석의 어려움

- 지방세외수입의 원가보상율은 관련법규 개정 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기에 아무리 중앙정부가 관련 법률을 제·개정 하는 노력을 기울여도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임(고승희 외, 2015)
- 아울러 원가분석을 위한 원가분석 요소들이 각각의 서비스 간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각 프로그램에 따라 기관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평균 적정요금의 산출이 매우 어려우며 비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임(고승희 외, 2015)



## 세외수입 요율 적정성 검토

제1절 세종시 세외수입 원가계산 대상과 기본가정

제2절 세종시의 세외수입 원가분석

제3절 세외수입 적정 요율산정을 위한 전문가 조사

# 4장



# 제4장 세외수입 요율 적정성 검토

## 제1절 세종시 세외수입 원가계산 대상과 기본가정

### 1. 원가의 개념 및 계산

#### 1) 원가의 개념 및 분류

- 원가(Cost)는 특정한 자원을 얻기 위해서 포기된(소비된) 자원의 가치를 말하며, 제품 1단위당 소요되는 모든 원재료, 노동력, 생산설비 소모량, 전기·가스 등의 소모액을 포괄하여 집계한 것으로 봄(주운현, 2008)
  - 원가는 재화나 용역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가치인 취득원가(예, 부동산 중개료, 등록세, 취득세 등),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간 자원의 가치인 제조원가(예, 재료원가, 급여 등)로 나뉨
  - 또한 생산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소모된 경제적 가치를 의미하며 비정상적인 소모분, 생산 활동 이 외의 다른 활동에서 소모된 부분은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주운현, 2008)
- 이렇듯 원가는 제조, 판매, 서비스회사 등 모든 회사에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제조원가는 제품용역의 원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품의 용역에 내제되어 있다가 판매되었을 때 매출원가라는 비용(Expense)으로 대체함(고승희 외, 2015)
  - 비용은 매출 등 수입을 발생시키면서 사용된 자원의 가치로 수익의 창출 활동 과정 속에서 발생함
  - 즉, 원가가 재화나 용역의 생산을 위해 소비되는 경제적 가치(제조원가: 제품을 만드는데 쓰이는 금액)라면, 비용은 일정기간의 수익을 얻기 위해 소비되는 경제적 가치(기간원가)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쓰이는 금액을 의미함

○ 원가의 분류는 크게 (i) 발생형태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원가의 3요소), (ii) 제품 및 부문의 추적가능성에 따라 직접비와 간접비, (iii) 원가의 형태에 따라 고정비와 변동비, 그리고 (iv) 기초 및 가공원가로 구분되어 논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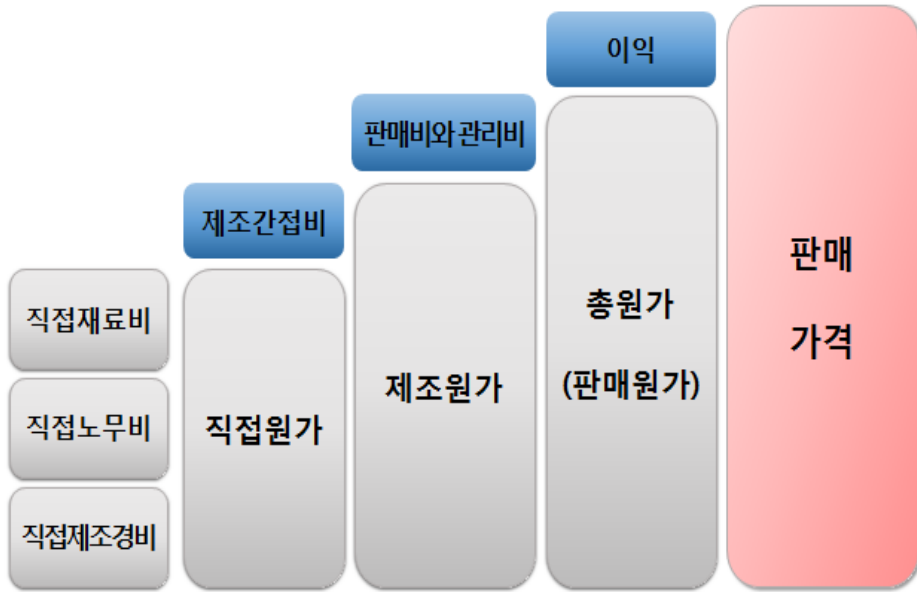
- 먼저, 발생형태에 따라서 제품의 제조를 위해 소모되는 물적 요소로 원재료비, 부재료비 등이 포함된 재료비, 임금, 급료 등의 인적요소인 노무비,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감가상각비, 가스·수도비, 전력비 등 제조원가 요소 등이 해당함
- 둘째, 제품 및 부문의 추적가능성에 따라 특정 제품의 제조를 위해서만 소비되며, 추적이 가능한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제조경비인 직접비, 여러 제품의 제조를 위해 공통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한 원가인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간접제조경비 등의 간접비로 구분됨
- 셋째, 원가의 형태에 따라서 조업도의 증감과 비교할 때, 총 원가가 비례하게 증가하는 변동비(예, 통화요금, 통화량에 따른 변동원가), 조업도의 증감과 관계없이 관련 범위 내 원가 총액이 일정한 고정비(기본료, 통화량에 관계없이 요금발생)로 구분됨

※ 그 밖에 원가의 형태에 있어서 준변동비(혼합원가), 준고정비(계단원가)가 추가적으로 구성되며, 전자는 고정비와 변동비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것으로 기본요금의 발생과 동시에 조업도가 증가에 비례하게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예, 전력비, 통신비, 가스·수도료 등), 후자는 일정한 조업도 범위 내에서는 고정비와 같이 원가총액은 일정하나 그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총 원가가 증가하는 원가(예, 작업량 추가에 따른 공장 감독자의 급료, 공장의 임대면적 증가에 따른 입차료 등)를 말함

- 마지막으로 기초원가·가공비가 있으며 기초원가의 경우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으로 이를 기본원가로 칭하며, 이에 반해 가공비는 제품의 제조에서 발생하게 되는 총 제조원가에서 직접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칭함

○ 다음 [그림 4-1]은 원가의 구성을 나타냄

- 제조원가는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제조경비(실무에서는 불가능), 제조간접비가 포함된 원가이며, 이 중 판매비와 관리비가 포함되면 총 원가에 해당됨



[그림 4-1] 원가의 구성

2) 원가계산: 전통적 원가계산 vs 활동기준 원가계산(ABC)

- 기존의 전통적 원가계산방식은 제조간접비를 집계하고 배부하는데 있어서 노동시간, 기계시간 등 한 가지 요인을 정하여 그 요인을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방식임
- 이에 반해 활동기준 원가계산(ABC: Activity-Based Costing)은 기존의 전통적인 원가계산방식의 문제점(제품의 원가가 과소 또는 과대 배부될 가능성이 높아 원가자료의 신뢰성에 문제제기)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활동(Activity)이 원가계산의 기초로 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전통적 원가계산방법과는 그 차이가 있음(주운현, 2008)



- 즉, 생산, 판매 등에 대한 지원활동에 대한 원가를 생산과 관련된 기준으로 제품에 배부되는 것이 아니라 주문처리, 작업준비비, 감독비, 재료취급비, 운반비와 같은 원가동인(cost driver)에 기초해서 제품으로 배부하는 방식으로 접근방법의 차이가 있음(고승희 외, 2015)

**[표 4-1] 전통적 원가계산과 활동원가계산의 비교**

항목	전통적 원가계산	활동기준 원가계산(ABC)
기본가정	각 제품이 자원을 소비	활동이 자원을 소비하고, 제품이 활동을 소비
초점	원가관리	활동관리
원가배부기준	직접노무비, 기계시간 등 생산관련 지표	활동원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원가동인
원가배부대상	단일원가대상(제품이나 작업)	다양한 원가대상 (제품라인, 고객, 공급자, 유통경로)
배분기준의 수	적다(노무원가, 노동시간, 기계시간, 생산수량)	많다(기계시간, 구매주문횟수, 작업준비횟수, 생산주문횟수, 검사횟수 등)
제조간접원가와 배분기준의 인과관계 정도	인과관계가 적음	인과관계가 큼
원가정보의 정확성	과소/과대배부 문제(낮음)	높음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적음	큼

자료: 고승희 외(2015) 재구성

## 2. 원가계산의 대상 및 기본가정

### 1) 세종시 세외수입 원가계산 대상

- 현재 세종시를 중심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수집된 세외수입 약 33종이 있

으며 그 중에서 원가분석이 가능한 세외수입항목만을 대상으로 원가 기초 자료를 요청하여 수집하였음

- 각각의 세외수입 항목에 대한 원가분석을 위해서는 많은 자료가 필요하나 정확한 원가계산에는 한계가 있음
  - 원가분석을 위한 자료는 매우 정확하지 못한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부서마다 원가분석을 고려해 결산과 회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가분석을 위해 별도로 자료를 도출하거나 작성해야하는 현실임
- 정확한 원가계산이 가능하도록 각 세외수입항목 당 회계 담당자로부터 기초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제공된 자료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결산자료를 통해 검토가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33개의 세외수입 항목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음
- 이에 본 연구는 정확한 원가계산을 위해 자료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각 세외수입항목 당 회계 담당자에게 검토 및 확인 과정을 2차에 걸쳐 거쳤으며, 이 중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연구자 등과 평가와 협의 과정을 통하여 14개를 선정하였음
  - 세외수입 항목 당 보다 상세한 자료 확인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른 가능성과 금액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효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상’, ‘중’, ‘하’로 평가하여 ‘중’ 이상의 항목을 선정함
  - 예외적으로 금액적인 면에서 크지는 않았으나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세외수입 항목(녹지·공원점용료, 전주점용료 등)에 대하여 담당공무원과의 협의를 통해 분석대상에 포함시켰음을 밝힘

[표 4-2] 세종시의 원가분석 세외수입 항목

연번	사용료·수수료	수입금액(천원)	가능성	의미성	분석대상 선정
1	주차장사용료(공사공단)	22,714,700	상	중	0
2	조치원읍 부설주차장사용료	10,373,710	하	하	
3	금남대평시장 주차장사용료	5,500,000	하	하	
4	장례식장 사용료	2,754,110,000	상	상	0
5	화장장 사용료	1,658,249,690	상	상	0
6	봉안자연장 사용료	1,970,454,100	상	상	0
7	수영장 사용료	104,624,910	상	중	0
8	농어민체육센터 일반사용료	6,150,120	상	중	0
9	세종체육시민회관일반사용료	36,499,710	상	중	0
10	조치원전용축구장 사용료	21,108,000	상	중	0
11	조치원전용테니스장 사용료	6,522,000	상	중	0
12	전의면 축구장 사용료	3,500,000	하	중	
13	문화예술관사용료	16,999,900	중	하	
14	시민회관사용료	-	중	하	
15	공원사용료	168,791,080	하	하	
16	도담동 복컴 체육시설사용료	25,487,000	하	하	
17	중촌동 복컴 체육시설사용료	-	하	하	
18	고운동 복컴 체육시설사용료	-	하	하	
19	보람동 복컴 체육시설사용료	-	하	하	
20	어진동 복컴 체육시설사용료	28,932,000	하	하	
21	장군면 목욕탕 사용료	2,501,000	상	중	0
22	공영자전거사용료	108,464,890	하	상	
23	합강캠핑장사용료	278,783,000	중	중	0
24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465,811,120	중	중	0
25	음식물쓰레기	-	하	하	
26	종량제 봉투판매	-	하	하	
27	공원녹지점용료	47,479,000	중	하	0
28	계속도로점용료(전주)	70,450	중	하	0
29	가축분뇨처리수수료	-	하	중	
30	가축분뇨운반수수료	-	하	하	
31	재활용수거판매 수수료	99,914,910	하	하	
32	고형연료판매 수수료	무상판매	하	하	
33	정보이용수수료	-	하	하	

## 2) 세종시 세외수입 원가계산을 위한 기본가정과 방법<sup>11)</sup>

- 세종시의 시설물 사용료 원가계산은 전통적인 원가계산 방식을 따르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결산자료 등에 근거한 운영비용, 해당시설의 건물 및 기계장비(시설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그리고 해당시설에 위치한 토지가액을 근거 자본비용으로 나누어 계산함
  - 먼저, 운영비용은 재료비, 인건비, 경비로 구분하였으며 이 중 경비는 민간위탁경비, 경상이전비, 동력비 등이 포함된 운영경비가 포함되었음
  - 둘째, 감가상각비는 건물 및 기계장치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구분하였으며, 이는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표를 참고해 내용년수를 적용,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로 계산하였음
  - 마지막으로 자본비용은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이 있으며 이 중 자기자본비용에 대해서는 2018년 7월 3년 만기인 국채수익율 2.1%를 활용하여 계산함

[표 4-3]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표

구분	내용연수	구조 또는 자산명
1	5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2	12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3	20년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그 밖의 구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건축물
4	4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건축물

11) 본 연구에서 세외수입의 원가계산을 위한 기본가정과 방법은 주로 고승희 외(2015)의 연구를 참고하였음을 밝힘

- 아울러 본 연구의 세외수입 원가분석 대상에 포함되는 대형폐기물수수료, 공원 녹지점용료, 그리고 전주점용료에 대한 원가계산 방식은 시설물 원가계산방식과는 차이를 두어 계산하였음
- 먼저, 대형폐기물 수수료 요율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수수료 개황(수수료의 명칭, 담당부서, 근거법규, 담당자 호봉 및 직급, 현재의 요율 등)을 파악, 둘째, 사무처리 소요시간(접수, 배부, 결제 및 정리), 마지막으로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인건비, 재료비, 처리비, 기타비용 등)을 분석해야 함

**[표 4-4] 수수료 처리 조사표 예시**

<p>I. 수수료의 개황</p> <p>1) A시의 수수료 명칭: 토지지목변경신청</p> <p>2) 담당부서: A시 토목과</p> <p>3) 근거법규: 지적법 제34조</p> <p>4) 현 요율: 550원</p> <p>5) 업무처리 흐름 및 소요시간: 30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 2분</li> <li>- 관계공부 확인: 5분</li> <li>- 사실조사 및 확인: 18분</li> <li>- 결제 및 관계공부 처리: 5분</li> </ul> <p>II. 수수료 원가분석(1건당 비용)</p> <p>1) 인건비: 5,300원</p> <p>2) 여비: 430원</p> <p>3) 인쇄 및 제본비: 30원</p> <p>4) 소모품비: 3.5원</p> <p>5) 기타경비: 40원</p> <p>6) 총 비용: 5,773.5원</p> <p>III. 실비보상율</p> <p>(550원(현 요율) ÷ 5,773.3원) × 100 = 9.52%</p>
---

- [표 4-4]에 제시한 조사표에 근거하여 이에 대한 원가분석의 예시를 [표 4-5]와 같이 제시하였음

[표 4-5] A시 수수료 원가분석 예시

(단위 : 원)

구분	원가산출내역	원가 금액	
원 가 항 목	인건비	인건비 ÷ 25 ÷ 480분 × 30분	5,300
	여비	여비 ÷ 240 × 15분	430
	인쇄제본비	3(신청서+복명서+통지서) × 6.46(A4용지)	30
	소모품비	복사액, 복사지, 인주, 볼펜, 스탬프, 풀 등	3.5
		기타경비	40
	총계	5,773.5	

- 둘째, 공원녹지 및 전주 점용요율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점용료 산정기준표를 적용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요율의 적성을 검토하기 위해 점용자가 얻는 이익을 도로 및 녹지의 가치를 반영하여 산정식을 산출하였음
  - 즉, 점용료의 액수를 도로에 있는 토지 가격, 점용면적, 사용료 비율, 그리고 수정률 등을 각각 곱한 값을 통해 산정할 수 있음
  - 사용료 비율은 특정지역의 임대율을, 그리고 수정률은 지상에 해당되는 경우 2/3=0.67을 도출해 산식에 포함시킴<sup>12)</sup>

[표 4-6] A시의 점용요율 산정 예시

※ 점용료의 요율 =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점용면적 × 사용료 비율 × 수정률
○ 점용료 산정 예시= 1,680,000원×0.99174m <sup>2</sup> × 사용료 비율×0.67
- 개별공시지가(원/m <sup>2</sup> ) : 1,680,000원 2008년 1월 1일 기준
- 점용면적: 0.3평(0.99174m <sup>2</sup> : 전주1개가 차지하는 평균 면적)
- 사용료비율: 2018년 기준 국토부 임대료 기준
- 수정률: 0.67

12) 수정률의 경우 지하와 지상의 수정률로 나뉘며 민간 토지임대차실태(일본사례)를 참고, 지상의 경우 2/3, 지하의 경우 1/3로 고려하고 있음(김종순·주운현, 2009)

## 제2절 세종시의 세외수입 원가분석

### 1. 체육시설 원가분석 결과

#### 1) 전동면 스포츠센터 수영장

##### (1) 수영장 운영비

- 전동면 스포츠센터 수영장의 운영비용 합계금액은 376,884천 원으로 이 중 경비는 민간위탁경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동면 스포츠센터 수영장의 경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그 외 건물이나 토지 등은 시의 소유임

[표 4-7] 수영장 운영비

(단위 : 천 원)

구분	재료비	인건비	경비	계
2017년 비용	-	-	376,884	376,884

##### (2) 수영장 감가상각비

- 전동면 스포츠센터 수영장의 감가상각비 합계금액은 247,294천 원으로 건물의 감가상각비의 경우 내용연수를 40년으로 적용하여 산정함

[표 4-8] 수영장 감가상각비

(단위 : 천 원)

구분	건물가액	기계·장비 등	건물 감가상각비	기타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계
2017년 비용	9,891,743	-	247,294	-	247,294

### (3) 수영장 자본비

- 전동면 스포츠센터 수영장의 자본비용 합계금액은 476천 원으로 토지가액에 대해 적정투자보수율인 2.10%(2018년 7월 기준)를 적용하여 자기자본비용을 계산함

[표 4-9] 수영장 자본비

(단위 : 천 원)

구분	토지가액	자기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자본비용 계
2017년 비용	22,669	476	-	476

### (4) 수영장 시설원가

- 전동면 스포츠센터 수영장의 시설원가 금액은 624,654천 원으로 이는 운영비용, 감가상각비, 그리고 자본비용을 포함한 금액임

[표 4-10] 수영장 시설원가

(단위 : 천 원)

구분	운영비용	감가상각비	자본비용	시설원가 계
2017년 비용	376,884	247,294	476	624,654

### (5) 수영장 기준단위 및 단위당 원가

- 전동면 스포츠센터 수영장의 기준단위는 이용자수로 하였으며, 2017년 기준 74,463명으로 나타남
  - 1일 이용자수와 1일 단체이용자수의 합계를 총 기준단위로 정하였음



[표 4-11] 수영장 기준단위

(단위 : 명)

구분	이용자수(예시)							장기 회원	계
	성인	청소년	어린이	전동면 주민	삼중리 주민	회원 등록	소계		
1일 이용	12,910	1,063	1,663	5,525	9,163	1,090	31,414	25,484	74,463
1일 단체	9,951	93	458	6,573	-	490	17,565		
계	22,861	1,156	2,121	12,098	9,163	1,580	48,979	25,484	74,463

- 2017년 기준 수영장의 기준단위당 운영비용은 5,061원이며 기준단위당 시설원가는 8,389원에 해당함

[표 4-12] 수영장 기준단위당 원가

기준단위수 (명)	운영비용 (천원)	시설원가 (천원)	단위당운영비 (원)	단위당원가 (원)
74,463	376,884	624,654	5,061	8,389

## 2)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 (1)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운영비

- 농어민 문화체육센터의 운영비용 합계금액은 109,941천 원으로 이 중에서 경비는 위탁용역비, 동력비, 시설·사무운영비 등으로 구성됨

[표 4-13]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운영비

(단위 : 천 원)

구분	재료비	인건비	경비	계
2017년 비용	-	24,423	85,518	109,941

**(2)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감가상각비**

- 농어민 문화체육센터의 감가상각비 합계금액은 93,828천 원으로 건물의 감가상각비의 경우 내용연수를 40년으로 적용해 90,000천 원으로 산정됨
- 기계 및 기타장비의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해 3,828천 원으로 집계됨

**[표 4-14]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감가상각비**

(단위 : 천 원)

구분	건물가액	기계·장비 등	건물 감가상각비	기타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계
2017년 비용	3,600,000	19,142	90,000	3,828	93,828

**(3)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자본비**

- 농어민 문화체육센터의 자본비용 합계금액은 44,481천 원으로 토지가액에 대해 적정투자보수율인 2.10%(2018년 7월 기준)를 적용하여 자기자본비용을 계산함

**[표 4-15]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자본비**

(단위 : 천 원)

구분	토지가액	자기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자본비용 계
2017년 비용	2,118,131	44,481	-	44,481

**(4)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시설원가**

- 농어민 문화체육센터의 시설원가 금액은 248,250천 원으로 이는 운영비용, 감가상각비, 그리고 자본비용을 포함한 금액임

[표 4-16]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시설원가

(단위 : 천 원)

구분	운영비용	감가상각비	자본비용	시설원가 계
2017년 비용	109,941	93,828	44,481	248,250

(5)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기준단위 및 단위당 원가

- 농어민 문화체육센터의 기준단위는 평일, 공휴일의 이용자수로 하였으며 이는 2017년 기준 11,388명으로 나타남

[표 4-17]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기준단위 및 단위당 원가

(단위 : 명)

구분	4시간 이내(1면)
평일	8,580
공휴일	2,808
계	11,388

- 2017년 기준 농어민 문화체육센터의 기준단위당 운영비용은 9,654원이며 기준단위당 시설원가는 21,799원에 해당함

[표 4-18]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단위당 원가

기준단위수 (명)	운영비용 (천원)	시설원가 (천원)	단위당운영비 (원)	단위당원가 (원)
11,388	109,941	248,250	9,654	21,799

3) 세종시민체육관

(1) 세종시민체육관 운영비

- 세종시민체육관 운영비용 합계금액은 232,759천 원으로 이 중에서 경비는 위탁용역비, 동력비, 시설·사무운영비 등으로 구성됨

[표 4-19] 세종시민체육관 운영비

(단위 : 천 원)

구분	재료비	인건비	경비	계
2017년 비용	4,204	48,846	179,709	232,759

(2) 세종시민체육관 감가상각비

- 세종시민체육관의 감가상각비 합계금액은 176,659천 원으로 건물의 감가상각비의 경우 내용연수를 40년으로 적용해 175,000천 원으로 산정됨
- 그리고 기계 및 기타장비의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해 1,659천 원으로 집계됨

[표 4-20] 세종시민체육관 감가상각비

(단위 : 천 원)

구분	건물가액	기계·장비 등	건물 감가상각비	기타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계
2017년 비용	7,000,000	8,293	175,000	1,659	176,659

(3) 세종시민체육관 자본비

- 세종시민체육관 자본비용 합계금액은 110,606천 원으로 토지가액에 대해 적정투자보수율인 2.10%(2018년 7월 기준)를 적용하여 자기자본 비용을 계산함

[표 4-21] 세종시민체육관 자본비

(단위 : 천 원)

구분	토지가액	자기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자본비용 계
2017년 비용	5,266,956	110,606	-	110,606

(4) 세종시민체육관 시설원가

- 세종시민체육관의 시설원가 금액은 520,024천 원으로 이는 운영비용, 감가상각비, 그리고 자본비용을 포함한 금액임

[표 4-22] 세종시민체육관 시설원가

(단위 : 천 원)

구분	운영비용	감가상각비	자본비용	시설원가 계
2017년 비용	232,759	176,659	110,606	520,024

(5) 세종시민체육관 기준단위 및 단위당 원가

- 세종시민체육관 기준단위는 2시간 이내, 4시간 이내의 이용자수로 하였으며 이는 2017년 기준 38,759명으로 나타남

[표 4-23] 세종시민체육관 기준단위 및 단위당 원가

(단위 : 명)

구분(이용자수)	2시간 이내	4시간 이내	계
일반	27,118	11,641	38,759
구분(이용횟수)	4시간 이내	8시간 이내	계
전용(체육경기)	1,586	22,433	24,019
전용(체육외행사)	1,800	5,608	7,408

- 2017년 기준 세종시민체육관의 기준단위당 운영비용은 6,005원이며 기준단위당 시설원가는 13,417원에 해당함

[표 4-24] 세종시민체육관 단위당 원가

기준단위수 (명)	운영비용 (천원)	시설원가 (천원)	단위당운영비 (원)	단위당원가 (원)
38,759	232,759	520,024	6,005	13,417

4) 조치원 체육공원 축구장

(1) 조치원 체육공원 축구장 운영비

- 조치원 체육공원 축구장 운영비용 합계금액은 23,658천 원으로 이 중에서 경비는 위탁용역비, 동력비, 시설·사무운영비 등으로 구성됨

[표 4-25] 조치원 체육공원 축구장 운영비

(단위 : 천 원)

구분	재료비	인건비	경비	계
2017년 비용	29	6,104	17,525	23,658

(2) 조치원 체육공원 축구장 감가상각비

- 조치원 체육공원 축구장 감가상각비 합계금액은 4,765천 원으로 건물의 감가상각비의 경우 내용연수를 40년으로 적용해 3,750천 원으로 산정됨
- 기계 및 기타장비의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해 1,015천 원으로 집계됨

[표 4-26] 조치원 체육공원 축구장 감가상각비

(단위 : 천 원)

구분	건물가액	기계·장비 등	건물 감가상각비	기타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계
2017년 비용	150,000	5,073	3,750	1,015	4,765

(3) 조치원 체육공원 축구장 자본비

- 조치원 체육공원 축구장의 자본비용 합계금액은 6,759천 원으로 토지가액에 대해 적정투자보수율인 2.10%(2018년 7월 기준)를 적용하여 자기자본비용을 계산함

[표 4-27] 조치원 체육공원 축구장 자본비

(단위 : 천 원)

구분	토지가액	자기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자본비용 계
2017년 비용	321,847	6,759	-	6,759

(4) 조치원 체육공원 축구장 시설원가

- 조치원 체육공원 축구장의 시설원가 금액은 35,182천 원으로 이는

운영비용, 감가상각비, 그리고 자본비용을 포함한 금액임

[표 4-28] 조치원 체육공원 축구장 시설원가

(단위 : 천 원)

구분	운영비용	감가상각비	자본비용	시설원가 계
2017년 비용	23,658	4,765	6,759	35,182

(5) 조치원 체육공원 축구장 기준단위 및 단위당 원가

- 조치원 체육공원 축구장 기준단위는 체육경기, 체육행사 등 이용횟수로 하였으며 이는 2017년 기준 450회로 나타남

[표 4-29] 조치원 체육공원 축구장 기준단위

(단위 : 회)

구분	체육경기	체육 외 행사	계
2시간 이내	423	-	423
4시간 이내	24	-	24
8시간 이내	2	1	3
계	449	1	450

- 2017년 기준 조치원 체육공원 축구장의 기준단위당 운영비용은 52,573원이며 기준단위당 시설원가는 78,182원에 해당함

[표 4-30] 조치원 체육공원 축구장 단위당 원가

기준단위수 (회)	운영비용 (천원)	시설원가 (천원)	단위당운영비 (원)	단위당원가 (원)
450	23,658	35,182	52,573	78,182

5) 조치원 체육공원 테니스장

(1) 조치원 체육공원 테니스장 운영비

- 조치원 체육공원 테니스장 운영비용 합계금액은 51,028천 원으로 이

중 경비는 위탁용역비, 동력비, 시설·사무운영비 등으로 구성됨

**[표 4-31] 조치원 체육공원 테니스장 운영비**

(단위 : 천 원)

구분	재료비	인건비	경비	계
2017년 비용	-	6,104	44,924	51,028

**(2) 조치원 체육공원 테니스장 감가상각비**

- 조치원 체육공원 테니스장의 감가상각비 합계금액은 3,425천 원으로 건물의 감가상각비의 경우 내용연수를 40년으로 적용해 3,425천 원으로 산정됨

**[표 4-32] 조치원 체육공원 테니스장 감가상각비**

(단위 : 천 원)

구분	건물가액	기계·장비 등	건물 감가상각비	기타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계
2017년 비용	137,000	-	3,425	-	3,425

**(3) 조치원 체육공원 테니스장 자본비**

- 조치원 체육공원 테니스장 자본비용 합계금액은 2,509천 원으로 토지가액에 대해 적정투자보수율인 2.10%(2018년 7월 기준)를 적용하여 자기자본비용을 계산함

**[표 4-33] 조치원 체육공원 테니스장 자본비**

(단위 : 천 원)

구분	토지가액	자기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자본비용 계
2017년 비용	119,461	2,509	-	2,509

**(4) 조치원 체육공원 테니스장 시설원가**

- 조치원 체육공원 테니스장 시설원가 금액은 56,962천 원으로 이는 운



영비용, 감가상각비, 그리고 자본비용을 포함한 금액임

**[표 4-34] 조치원 체육공원 테니스장 시설원가**

(단위 : 천 원)

구분	운영비용	감가상각비	자본비용	시설원가 계
2017년 비용	51,028	3,425	2,509	56,962

**(5) 조치원 체육공원 테니스장 기준단위 및 단위당 원가**

- 조치원 체육공원 테니스장의 기준단위는 체육경기 횟수로 하였으며, 2018년 기준 총 874회에 해당됨
  - 테니스장의 경우 7월에서 10월까지 총 4달 간 테니스장 공사가 이루어진 관계로 1년 동안의 시설원가를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단위당 원가분석을 위하여 정확한 비용을 산정할 때, 한계가 있어 운영비용 및 시설원가에 9/12(0.75)를 곱한 값을 통해 산정함

**[표 4-35] 조치원 체육공원 테니스장 기준단위**

(단위 : 회)

구분	체육경기	비고
4시간 이내(1면)	874	17. 07. ~ 10. 테니스장공사
계	874	

- 2017년 기준 조치원 체육공원 테니스장의 기준단위당 운영비용은 43,788원이며 기준단위당 시설원가는 48,881원에 해당함

**[표 4-36] 조치원 체육공원 테니스장 단위당 원가**

기준단위수 (회)	운영비용 (천원)	시설원가 (천원)	단위당운영비 (원)	단위당원가 (원)
874	$51,028 \times 0.75 = 38,271$	$56,962 \times 0.75 = 42,722$	43,788	48,881

## 2. 은하수 공원 원가분석 결과

### 1) 은하수 공원 장례식장

#### (1) 장례식장 운영비

- 은하수 공원 장례식장의 운영비용 합계금액은 1,200,283천 원으로 이중 경비는 위탁용역비, 동력비, 시설·사무운영비 등으로 구성됨

[표 4-37] 장례식장 운영비

(단위 : 천 원)

구분	재료비	인건비	경비	계
2017년 비용	479,204	426,601	294,478	1,200,283

#### (2) 장례식장 감가상각비

- 은하수 공원 장례식장 감가상각비 합계금액은 133,973천 원으로 건물의 감가상각비의 경우 내용연수를 40년으로 적용해 64,500천 원으로 산정됨
- 기계 및 기타장비의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해 69,473천 원으로 집계됨

[표 4-38] 장례식장 감가상각비

(단위 : 천 원)

구분	건물가액	기계·장비 등	건물 감가상각비	기타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계
2017년 비용	2,580,000	347,364	64,500	69,473	133,973

#### (3) 장례식장 자본비

- 은하수 공원 장례식장의 자본비용 합계금액은 3,211천 원으로 토지가액에 대해 적정투자보수율인 2.10%(2018년 7월 기준)를 적용하여 자기자본비용을 계산함

[표 4-39] 장례식장 자본비

(단위 : 천 원)

구분	토지가액	자기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자본비용 계
2017년 비용	152,881	3,211	-	3,211

(4) 장례식장 시설원가

- 은하수 공원 장례식장의 시설원가 금액은 1,337,467천 원으로 이는 운영비용, 감가상각비, 그리고 자본비용을 포함한 금액임

[표 4-40] 장례식장 시설원가

(단위 : 천 원)

구분	운영비용	감가상각비	자본비용	시설원가 계
2017년 비용	1,200,283	133,973	3,211	1,337,467

(5) 장례식장 기준단위 및 단위당 원가

- 장례식장의 경우 총 2017년 기준단위는 이용횟수로 총399건에 해당되며 기준단위당 운영비용은 3,008,228원, 기준단위당 시설원가는 3,351,796원에 해당함

[표 4-41] 장례식장 단위당 원가

기준단위수 (건)	운영비용 (천원)	시설원가 (천원)	단위당운영비 (원)	단위당원가 (원)
399	1,200,283	1,337,367	3,008,228	3,351,796

2) 은하수 공원 화장장

(1) 화장장 운영비

- 은하수 공원 화장장 운영비용 합계금액은 1,730,602천 원으로 이 중에서 경비는 위탁용역비, 동력비, 시설·사무운영비 등으로 구성됨

[표 4-42] 화장장 운영비

(단위 : 천 원)

구분	재료비	인건비	경비	계
2017년 비용	15,163	566,063	1,149,376	1,730,602

(2) 화장장 감가상각비

- 은하수 공원 화장장 감가상각비 합계금액은 85,798천 원으로 건물의 감가상각비의 경우 내용연수를 40년으로 적용해 78,075천 원으로 산정됨
  - 기계 및 기타장비의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해 38,615천 원으로 집계됨

[표 4-43] 화장장 감가상각비

(단위 : 천 원)

구분	건물가액	기계·장비 등	건물 감가상각비	기타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계
2017년 비용	3,123,000	38,615	78,075	7,723	85,798

(3) 화장장 자본비

- 은하수공원 화장장의 자본비용 합계금액은 5,826천 원으로 토지가액에 대해 적정투자보수율인 2.10%(2018년 7월 기준)를 적용하여 자기자본 비용을 계산함

[표 4-44] 화장장 자본비

(단위 : 천 원)

구분	토지가액	자기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자본비용 계
2017년 비용	277,422	5,826	-	5,826

(4) 화장장 시설원가

- 은하수공원 화장장의 시설원가 금액은 1,822,226천 원으로 이는 운영 비용, 감가상각비, 그리고 자본비용을 포함한 금액임

**[표 4-45] 화장장 시설원가**

(단위 : 천 원)

구분	운영비용	감가상각비	자본비용	시설원가 계
2017년 비용	1,730,602	85,798	5,826	1,822,226

**(5) 화장장 기준단위 및 단위당 원가**

- 화장장의 2017년 기준단위인 이용횟수는 총 8,181건으로 나타났으며, 기준단위당 운영비용은 211,539원, 기준단위당 시설원가는 222,739원에 해당함

**[표 4-46] 화장장 단위당 원가**

기준단위수 (건)	운영비용 (천원)	시설원가 (천원)	단위당운영비 (원)	단위당원가 (원)
8,181	1,730,602	1,822,226	211,539	222,739

**3) 은하수 공원 봉안자연장**

**(1) 봉안자연장 운영비**

- 은하수 공원 봉안자연장 운영비용 합계금액은 345,719천 원으로 이 중에서 경비는 위탁용역비, 동력비, 시설·사무운영비 등으로 구성됨

**[표 4-47] 봉안자연장 운영비**

(단위 : 천 원)

구분	재료비	인건비	경비	계
2017년 비용	42,018	200,462	103,239	345,719

**(2) 봉안자연장 감가상각비**

- 은하수공원 봉안자연장의 감가상각비 합계금액은 43,172천 원으로 건물의 감가상각비의 경우 내용연수를 40년으로 적용해 32,425천 원으로 산정됨

- 기계 및 기타장비의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해 10,747천 원으로 집계됨

[표 4-48] 봉안자연장 감가상각비

(단위 : 천 원)

구분	건물가액	기계·장비 등	건물 감가상각비	기타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계
2017년 비용	1,297,000	53,736	32,425	10,747	43,172

(3) 봉안자연장 자본비

- 봉안자연장 자본비용 합계금액은 2,420천 원으로 토지가액에 대해 적정투자보수율인 2.10%(2018년 7월 기준)를 적용하여 자기자본비용을 계산함

[표 4-49] 봉안자연장 자본비

(단위 : 천 원)

구분	토지가액	자기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자본비용 계
2017년 비용	115,240	2,420	-	2,420

(4) 봉안자연장 시설원가

- 봉안자연장의 시설원가 금액은 391,311천 원으로 이는 운영비용, 감가상각비, 그리고 자본비용을 포함한 금액임

[표 4-50] 봉안자연장 시설원가

(단위 : 천 원)

구분	운영비용	감가상각비	자본비용	시설원가 계
2017년 비용	345,719	43,172	2,420	391,311

(5) 봉안자연장 기준단위 및 단위당 원가

- 봉안자연장의 2017년 기준단위인 이용횟수는 총 2,484건으로 나타났

으며, 기준단위당 운영비용은 139,178원, 기준단위당 시설원가는 157,532원에 해당함

[표 4-51] 봉안자연장 단위당 원가

기준단위수 (건)	운영비용 (천원)	시설원가 (천원)	단위당운영비 (원)	단위당원가 (원)
2,484	345,719	391,311	139,178	157,532

### 3. 목욕탕 및 캠핑장 원가분석 결과

#### 1) 장군면 작은 목욕탕

##### (1) 목욕탕 운영비

- 장군면 작은 목욕탕의 운영비용 합계금액은 28,604천 원으로 이 중에서 경비는 동력비, 시설·사무운영비 등으로 구성됨

[표 4-52] 목욕탕 운영비

(단위 : 천 원)

구분	재료비	인건비	경비	계
2017년 비용	2,100	9,504	17,000	28,604

##### (2) 목욕탕 감가상각비

- 장군면 작은 목욕탕 기계 및 기타 장비 감가상각비의 경우 내용연수를 5년으로 적용해 39,885천 원으로 산정됨
  - 이에 반해 건물가액은 집계가 불가능해 목욕탕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가 없어 제외하였음

[표 4-53] 목욕탕 감가상각비

(단위 : 천 원)

구분	건물가액	기계·장비 등	건물 감가상각비	기타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계
2017년 비용	-	199,426	-	39,885	39,885

(3) 목욕탕 자본비

- 장군면 작은 목욕탕 자본비용 합계금액은 1,589천 원으로 토지가액에 대해 적정투자보수율인 2.10%(2018년 7월 기준)를 적용하여 자기자본 비용을 계산함

[표 4-54] 목욕탕 자본비

(단위 : 천 원)

구분	토지가액	자기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자본비용 계
2017년 비용	75,648	1,589	-	1,589

(4) 목욕탕 시설원가

- 장군면 작은 목욕탕 시설원가 금액은 70,078천 원으로 이는 운영비용, 감가상각비, 그리고 자본비용을 포함한 금액임

[표 4-55] 목욕탕 시설원가

(단위 : 천 원)

구분	운영비용	감가상각비	자본비용	시설원가 계
2017년 비용	28,604	39,885	1,589	70,078

(5) 목욕탕 기준단위 및 단위당 원가

- 장군면 작은 목욕탕의 기준단위는 1일 이용자수, 한당이용권 이용자수로 하였으며 한 달 이용자수의 경우 30일을 이용한다고 가정하여 집계·산정해 2017년 기준 14,107로 나타남



[표 4-56] 목욕탕 기준단위 및 단위당 원가

(단위 : 명)

구 분	1일 이용자수	한 달 이용권 이용자수	계
고령자(65세 이상)	2,495	388 × 30	14,107
일반(14세 이상)	2		
어린이(13세 이하)	-		
소계	2,497	11,640	

- 2017년 기준 작은 목욕탕의 기준단위당 운영비용은 2,027원이며 기준 단위당 시설원가는 4,968원에 해당함

[표 4-57] 목욕탕 단위당 원가

기준단위수 (명)	운영비용 (천원)	시설원가 (천원)	단위당운영비 (원)	단위당원가 (원)
14,107	28,604	70,078	2,027	4,968

## 2) 합강캠핑장

### (1) 합강캠핑장 운영비

- 합강캠핑장의 운영비용 합계금액은 533,594천 원으로 이 중에서 경비는 동력비, 시설·사무운영비 등으로 구성됨

[표 4-58] 합강캠핑장 운영비

(단위 : 천 원)

구분	재료비	인건비	경비	계
2017년 비용	9,786	339,029	184,779	533,594

### (2) 합강캠핑장 감가상각비

- 합강캠핑장의 감가상각비 합계금액은 661,200천 원으로 기계 및 장비 감가상각비의 경우 내용연수를 5년으로 적용해 661,200천 원으로 산정됨

- 건물가액의 경우 국토해양부 소유로 이관되어 감가상각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표 4-59] 합강캠핑장 감가상각비

(단위 : 천 원)

구분	건물가액	기계·장비 등	건물 감가상각비	기타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계
2017년 비용	-	3,305,999	-	661,200	661,200

(3) 합강캠핑장 자본비

- 합강캠핑장의 토지는 국토해양부로 이관되어 국토해양부 소유로 되어 있기에 자본비용 역시 계산하지 않았음

[표 4-60] 합강캠핑장 자본비

(단위 : 천 원)

구분	토지가액	자기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자본비용 계
2017년 비용	-	-	-	-

(4) 합강캠핑장 시설원가

- 합강캠핑장의 시설원가 금액은 1,194,794천 원으로 이는 운영비용,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금액임

[표 4-61] 합강캠핑장 시설원가

(단위 : 천 원)

구분	운영비용	감가상각비	자본비용	시설원가 계
2017년 비용	533,594	661,200	-	1,194,794

(5) 합강캠핑장 기준단위 및 단위당 원가

- 2017년 기준, 합강캠핑장의 기준단위는 팀별 이용자수로 하였으며 총 10,747로 나타남

[표 4-62] 합강캠핑장 기준단위 및 단위당 원가

구 분		'17년 기준 합계
계	팀	10,747
	이용(명)	75,430
오토존	팀	9,513
	이용(명)	68,824
태극존	팀	1,234
	이용(명)	6,606

- 2017년 기준 합강캠핑장의 기준단위당 운영비용은 49,651원이며 기준 단위당 시설원가는 111,174원에 해당함

[표 4-63] 합강캠핑장 단위당 원가

기준단위수 (팀)	운영비용 (천원)	시설원가 (천원)	단위당운영비 (원)	단위당원가 (원)
10,747	533,594	1,194,794	49,651	111,174

#### 4. 주차장 원가분석 결과

##### (1) 주차장 운영비

- 공사공단 주차장의 운영비용 합계금액은 144,052천 원으로 이 중에서 경비는 주로 위탁용역비, 동력비, 시설·사무운영비로 구성됨

[표 4-64] 주차장 운영비

(단위 : 천 원)

구분	재료비	인건비	경비	계
2017년 비용	-	88,652	55,400	144,052

**(2) 주차장 감가상각비**

- 공사공단 주차장의 감가상각비 합계금액은 3,276,904천 원으로 건물의 감가상각비의 경우 내용연수를 40년으로 적용해 81,923천 원으로 산정됨

**[표 4-65] 주차장 감가상각비**

(단위 : 천 원)

구분	건물가액	기계·장비 등	건물 감가상각비	기타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계
2017년 비용	3,276,904	-	81,923	-	81,923

**(3) 주차장 자본비**

- 공사공단 주차장의 자본비용 합계금액은 65,884천 원으로 토지가액에 대해 적정투자보수율인 2.10%(2018년 7월 기준)를 적용하여 자기자본 비용을 계산함

**[표 4-66] 주차장 자본비**

(단위 : 천 원)

구분	토지가액	자기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자본비용 계
2017년 비용	3,137,320	65,884	-	65,884

**(4) 주차장 시설원가**

- 주차장의 시설원가 금액은 291,859천 원으로 이는 운영비용, 감가상각비, 그리고 자본비용을 포함한 금액임

**[표 4-67] 주차장 시설원가**

(단위 : 천 원)

구분	운영비용	감가상각비	자본비용	시설원가 계
2017년 비용	144,052	81,923	65,884	291,859

**(5) 주차장 기준단위 및 단위당 원가**

- 공사공단 주차장의 기준단위는 무료, 유료의 자동차 주차대수로 하였으며, 2017년 기준 22,589대로 나타남

**[표 4-68] 주차장 기준단위 및 단위당 원가**

(단위 : 대)

구분	무료	유료	정기권(유료)	계
주차대수	6,083	7,980	8,526	22,589

- 2017년 기준으로 공사공단 주차장의 기준단위당 운영비용은 6,377원이며 기준단위당 시설원가는 12,920원에 해당함

**[표 4-69] 주차장 단위당 원가**

기준단위수	운영비용(천 원)	시설원가(천 원)	단위당운영비(원)	단위당원가(원)
22,589	144,052	291,859	6,377	12,920

**5.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원가분석<sup>13)</sup>**

- 다음 [표 4-70]은 각 읍·면·동별로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담당하는 담당부서 현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수거방식은 직영과 민간위탁방식을 겸하고 있음

13)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적정요율을 검토하기 위해서 세종시 전체 읍·면·동을 조사함에 있어 시간, 인력, 비용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강면, 전동면, 한솔동을 중심으로 담당자와 전화인터뷰를 통해 활동소비시간(스티커배부, 폐기물 수거 등)을 조사하였음

[표 4-70] 대형폐기물 처리 읍·면·동 및 담당부서

읍·면·동	배부 담당	수거 방식
조치원읍	환경6, 환경7	(직영) 해당 읍·면사무소 이첩 -동지역: 아름(1생활권), 한솔, 보람 -면지역: 장군, 금남, 부강  (대행) 대행업체 -면지역: 소정, 전의, 전동, 연기, 연동, 연서 -읍지역: 조치원읍
부강면	행정7, 환경9	
장군면	행정6, 사복7	
연서면	사복6, 사복7	
전동면	세무6, 사복8	
전의면	행정6, 행정9	
아름동	행정6, 행정7	
연기면	행정6	
연동면	사복6	
금남면	사복6	
소정면	행정6	
한솔동(가람)	행정6	
도담동(어진)	사복6	
종촌동	행정6	
고운동	행정8	
보람동(반곡, 소담, 대평)	행정6	
대평동	사복9	
새롬동(나성, 다정)	행정6	

- 2017년 기준 읍면동별로 대형폐기물의 총 판매 내역은 150,530매, 수익금액은 437,405,000원으로 나타남
- 대형폐기물 스티커 개당 평균 요율은 2,905.77원이며, 이를 제작하기 위한 재료비는 141.62원으로 민간위탁에 의하여 제작됨

[표 4-71] 대형폐기물 판매 내역 및 수익금액

금액(원)	2017년 판매 내역(매)	2017년 수익금액(원)
1,000	19,428	19,428,000
2,000	60,779	121,558,000
3,000	31,475	94,425,000
4,000	19,616	78,464,000
5,000	13,758	68,790,000
10,000	5,474	54,740,000
계	150,530	437,405,000

## [표 4-72]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조사표

1. 수수료 개황
  - ① 수수료 명칭: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 ② 담당부서: 읍·면·동 별 환경담당자
  - ③ 근거법률: 세종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 16조 2항, 17조 제1항
  - ④ 현 요율(평균): 2,905.77원
  - ⑤ 수수료 배부·수거 업무처리 소요시간: 12분
    - 접수: 2분
    - 배부: 4분
    - 결제 및 정리: 6분
    - 수거: 1.5분(건당)
2. 수수료의 원가분석(1건당 폐기물 원가)
  - ① 인건비
    - 판매 인건비: 1,955,100원(8급 5호봉 기준)
    - 수거 인건비: 1,575,860원(공무직 근로자)
  - ② 재료비: 141.62원
3. 원가보상율: 2,905.77원(현 요율) ÷ 3,679.8원(총 원가) × 100 = 78.9%

○ 다음은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개황 및 원가분석과 관련된 자료로 이를 통하여 원가보상율을 살펴보았음<sup>14)15)</sup>

-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원가분석 시 판매 및 수거에 대한 인건비를 산정하기 위해 부강면, 전동면, 한솔동 등을 중심으로 담당자 인터뷰를 통하여 소비활동시간, 재료비를 중심으로 원가항목에 포함시켰음

14) 일반적으로 판매 담당자의 인건비의 경우, 8급 5호봉 기준의 동일한 직급으로 처리 담당자는 공무직 인건비 기준(대형폐기물 수수료 수거업무에 한해 인건비 산정)을 적용하여 일반화 시켰으며, 그 외 여비, 기타 운영비, 차량 운영비, 감가상각비 관련 항목은 추정이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 포함시키지 못하였음을 밝힘. 그러나 무엇보다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경우 활동원가가 반영되어야 하는 연구 결과의 한계가 있음을 밝힘

15) 판매 담당자의 근무기준으로 보면 한 달에 20일을 근무하게 되며, 처리 담당자는 한 달에 약 6일(일주일에 1.5일) 정도 처리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4-73]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원가산출 내역

구분		원가산출내역	원가 금액(원)
원가 항목	판매 인건비	1,955,100원 ÷ 20일 ÷ 480분 × 12분	2,443.9
	수거 인건비 <sup>16)</sup>	1,575,860원(1/3 급여)× 4인 ÷ 6일 ÷ 480분 × 1.5분	1,094.3
	재료비	위탁경비	141.6
총계			3,679.8

- 현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총 판매액을 총 판매건수로 나누어 평균  
요율을 산정했으며 총 원가와 비교하여 원가보상율을 산정하였음

$$\text{※ } 78.9\%(\text{원가보상율}) = 2,905.77\text{원}(\text{현 요율}) \div 3,679.8\text{원}(\text{총 원가}) \times 100$$

## 6. 공원·녹지 및 전주점용요율 분석

### 1) 공원·녹지 점용료

- 세종시의 공원·녹지 점용료는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해 결정됨

$$\text{※ 세종시의 공원·녹지점용료} = \text{면적} \times \text{공시지가} \times \text{임대기간}(12/12\text{기준}) \times 0.05$$

- 임대료에 근거한 점용요율 산정을 앞서 논의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산식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한 점용요율과 현행 요율을  
비교하고자 함

$$\text{※ 점용료의 요율} = \text{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times \text{점용면적} \times \text{사용료 비율} \times \text{수정률}$$

16) 폐기물 처리 한솔동 공무원 담당자와 인터뷰 한 결과, 대형폐기물 수거를 위해서  
보통 일주일에 1.5일 정도 일정이 소요되며, 대형폐기물외에 다른 일정에 일반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등 일을 병행하기 때문에 모든 인건비가 대형폐기물을 수거함에 쓰이  
는 것이 아니라는 인터뷰 결과 있었음.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계산함(주당  
1/3의 투입시간으로 인건비도 그에 상응해 계산함)



○ 다음 [4-74]는 2017년 기준 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점용료 현황을 보여주고 있음

[표 4-74] 공원·녹지 점용료

지역	면적(㎡)	기간	공시지가(원)	공원점용료(원)
총계	16,629	-	2,882,200	47,479,000 <sup>17)</sup>
1	10	0.99	100,600	49,000
2	10	0.99	100,600	49,000
3	24	0.78	174,800	164,000
4	593	0.41	30,000	363,000
5	888	1.00	280,200	12,448,000
6	1,433	1.00	30,000	2,150,000
7	10	0.07	45,200	1,500
8	517	1.00	30,000	775,500
9	456	0.61	174,900	2,414,000
10	445	0.56	174,900	2,185,000
11	10	1.00	217,800	313,000
	52	1.00	12,500	
	24	1.00	52,800	
	12	1.00	174,900	
12	1,689	0.17	124,000	1,778,000
13	155	1.25	124,000	1,205,000
14	6,151	1.00	45,200	13,901,000
15	593	0.37	120,400	1,310,000
16	4	0.33	149,600	10,000
17	170	0.30	55,100	142,000
18	901	0.28	56,100	713,000
19	368	0.30	56,100	313,000
20	480	0.17	174,900	724,000
21	329	1.00	364,800	6,000,000
22	1,305	0.56	12,800	471,000

○ [표 4-75]에 정리한 내용을 이용하여 공원·녹지 점용요율을 산정하였음

17) 1년 단위로 면적 공시지가 임대기간(12/12=1) 0.05=68,774,272원으로 산정되어 평균 단위당 점용료는 4,136원에 해당됨

**[표 4-75] 공원·녹지 점용료 산정**

구분	단위
점용이 허가된 지역의 총 공시지가	1,375,485,445원
점용이 허가된 지역의 평균 공시지가	115,288원
1m <sup>2</sup>	0.3025평
점용이 허가된 지역의 단위(m <sup>2</sup> ) 당 공시지가	82,717원
허가된 지역의 공원점용료 총액	47,479,000원
제곱미터(m <sup>2</sup> ) 당 현재 평균 점용료	2,855원
제곱미터(m <sup>2</sup> ) 당 현재 평균 점용료(기간환산)	4,136원
사용료비율(임대료 기준)	0.155
수정률	0.67

- 세종시에서 공원·녹지점용료는 앞서 논의한 산식에 의해 도출되며, 다음과 같은 요율이 산정됨

$$\text{※ 평균 점용료 } 4,136\text{원} = 1\text{m}^2(\text{단위당 면적}) \times 82,717\text{원}(\text{점용이 허가된 지역의 단위당 공시지가}) \times (\text{임대기간}=12/12) \times 0.05$$

- 임대료 등 사용료 비율, 수정율을 고려한 공원·녹지 점용요율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은 요율이 산정해서 요율의 현실화 도출

$$\text{※ 점용요율} = 82,717\text{원}(\text{단위당 평균공시지가}) \times 1\text{m}^2(\text{단위당 면적}) \times 0.155 \times 0.67 = 8590.16\text{원}$$

$$\text{※ 요율현실화} = (4,135.83\text{원} \div 8,590.16\text{원}) \times 100 = 48.15\%$$

- 세종시의 평균임대료 17.9 천원으로 중대형 기준에 근거함(중대형 기준의 평균임대비율이 15.5%로 가장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가장 보수적인 관점에서 적용함)

## 2) 전주점용료

- 다음 [표 4-76]은 2017년, 2018년 기준, 조치원읍, 금남면, 장군면, 전동면을 중심으로 전주 및 점용료 현황을 정리하였으며 총 106개의 전주수를 나타냄

- 각각의 항목이 과소 집계된 이유는 전주점용을 허가할 시 「도로법시행령」 제71조에 2항 의거하여 부과 금액이 최소 1만원 원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자료가 입력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임(2017년 12월 5일 1만원으로 개정, 그 이전에는 5천 원)
- 전주 점용료 조정산식은 전주 개수를 중심으로 하고 필지에 따라 갑, 을, 병지로 구분되어 요율이 산정되며 감면사유가 있을시 감면을 적용함

※ 전주 점용료 조정산식 = (전주 개수(점용 수) × 갑, 을, 병지) × 점용개월 수/12월 × 감면율(감면사유시 적용)

- 갑지(광역시): 1,850원
- 을지(시 단위 등): 1,250원
- 병지(군 단위 읍, 면): 850원

[표 4-76] 전주 및 점용료 현황

구분	전주 수	면적	공시지가(원)	수입금액(원)
조치원읍	17	16.86	2,095,646	14,450
연기면	-	-	-	-
연동면	-	-	-	-
부강면	-	-	-	-
금남면	36	35.70	1,438,816	17,500
장군면	23	22.81	1,430,188	13,000
연서면	-	-	-	-
전의면	-	-	-	-
전동면	30	29.75	687,276	25,500
소정면	-	-	-	-
한솔동	-	-	-	-
도담동	-	-	-	-
아름동	-	-	-	-
종촌동	-	-	-	-
고운동	-	-	-	-
보람동	-	-	-	-
새롬동	-	-	-	-
계	106	105.12	5,651,926	70,450

- 전주점용료를 산정하기 위해 다음 [표 4-77]과 같은 각각의 항목에 대한 자료를 사용하였음

[표 4-77] 전주점용료 산정

구분	단위
전주1개당 점용료(병지)	850원
총 공시지가	5,651,926원
단위당 공시지가	53,674원
전주 1개당 점용면적	0.9917(m <sup>2</sup> )
사용료비율(임대료 기준)	0.155
정률 기준	0.05
수정률	0.67

- 전주점용료는 전주 개수를 단위로 계산되며 병지의 경우 850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요율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임대료 등 사용료 비율, 수정율을 고려한 점용요율과 「도로법시행령」에 근거한 정률방식(토지가액에 0.05를 곱한 금액)을 적용하여 요율을 비교함

※ 전주점용료 요율 = 53,717원(단위당 평균공시지가) × 1m<sup>2</sup>(단위당 면적) × 0.155 × 0.67 = 5,578.51원(사용료 비율, 수정률 비율 반영)/중대형 기준 평균임대료 17.9천원(15.5%)

- 요율현실화율 = (850원 ÷ 5,578.51원) × 100 = 15.23%

※ 전주점용료 요율 = 53,717원 × 1m<sup>2</sup>(단위당 면적) × 0.05 = 2,685.85원(「도로법시행령」근거)

- 요율현실화율 = (850원 ÷ 2,685.85원) × 100 = 31.65%

## 7. 시설관련 원가 및 사용료 비교: 원가보상율

- 요금의 원가보상율을 파악하기 위해서 세외수입 항목 당 수입금액대비 원가를 비교 즉, 사용료를 원가로 나누어 계산하였음
  - 아울러 조치원전용 테니스장 사용료의 경우 예외적으로 1, 2로 나누어 분석한 이유는 2017년의 경우 4개월간 테니스장 공사로 운영이 중단된 관계로 그에 비례하여 운영비와 총 원가를 조정(  $0.75=9/12$  )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운영비와 원가를 조정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모두 본 연구의 결과에 포함시켰음
- 분석결과, 세종시에 부과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봉안자연장,<sup>18)</sup> 장례식장, 화장장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현실화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세외수입 항목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모두 현실화시키기는 어려운 것이나, 세종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감안하여 점진적인 세외수입 요금의 적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할 필요성이 제기됨
-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10% 내외로 나타나는 세외수입들의 경우, 우선적으로 요율의 적정성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제기되며, 향후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원가분석을 고려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고승희 외, 2015)

---

18) 봉안자연장의 경우 매우 그 수익률이 매우 높은 수치(민간경영 봉안자연장에 비해서는 낮은 수익금)를 보이고 있는데, 은하수 공원 담당자와 인터뷰 결과, 투입되는 인력이 장례직장, 화장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인건비가 적게 계산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초기에 SK그룹이 5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조성원가가 원가항목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원가보상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봉안자연장의 경우 LH 역시 지원함)

[표 4-78] 세종시의 세외수입 총액 요금 원가보상율

사용료 종류	사용료 (천원)	운영비용 (천원)	원가 (천원)	요금 현실화 1 (%)	요금 현실화 2 (%)
수영장 사용료	104,625	376,884	624,654	27.76	16.75
농어민체육센터 일반사용료	62,081	109,941	248,250	56.47	25.01
세종체육시민회관 일반사용료	287,501	232,759	520,024	123.52	55.29
조치원전용축구장 사용료	21,108	23,658	35,182	89.22	60.00
조치원전용테니스장 사용료1	6,522	51,028	56,962	12.78	11.45
조치원전용테니스장 사용료2	6,522	38,271	42,722	17.04	15.27
장례식장 사용료	1,460,921	1,200,283	1,337,467	121.71	109.23
화장장 사용료	1,658,250	1,730,602	1,822,226	95.82	91.00
봉안지연장 사용료	1,970,454	345,719	391,311	569.96	503.55
장군면 목욕탕 사용료	2,501	28,604	70,078	8.74	3.57
합강캠핑장 사용료	278,783	533,594	1,194,794	52.25	23.33
주차장사용료(공사공단)	22,715	144,052	291,859	15.77	7.78

- 다음 [표 4-79]는 기준단위로 나눈 값으로 단위당 사용료, 운영비, 원가를 분석하였고, 요금의 원가보상율을 계산하였으며 위의 분석결과와 그 값이 일치하였음

**[표 4-79] 세종시의 세외수입 단위당 요금 원가보상율**

사용료 종류	단위당 사용료 (원)	단위당 운영비 (원)	단위당 원가 (원)	요금 현실화 1 (%)	요금 현실화 2 (%)
수영장 사용료	1,402	5,049	8,369	27.76	16.75
농어민체육센터 일반사용료	5,451	9,661	21,815	56.47	25.01
세종체육시민회관 일반사용료	942	6,005	13,417	123.52	55.29
조치원전용축구장 사용료	46,907	52,573	78,182	89.22	60.00
조치원전용테니스장 사용료1	7,462	43,788	65,174	17.04	11.45
조치원전용테니스장 사용료2	7,462	43,788	48,881	17.04	15.27
장례식장 사용료	690,253	3,008,228	3,352,048	121.71	109.23
화장장 사용료	202,695	211,539	222,739	95.82	91.00
봉안자연장 사용료	793,258	139,178	157,532	569.96	503.55
장군면 목욕탕 사용료	177	2,028	4,968	8.74	3.57
합강캠핑장 사용료	25,941	49,651	111,175	52.25	23.33
주차장사용료(공사공단)	1,006	6,377	12,920	15.77	7.78

## 제3절 세외수입 적정 요율산정을 위한 전문가 조사

### 1. 조사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 수수료의 산정을 위해 직면하는 문제점은 먼저, 어떤 재화 및 서비스를 사용료 수수료로 부과할 것인가? 둘째, 사용료 수수료의 산정에 있어서 포함되어야 비용은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셋째, 적절한 사용료·수수료의 수준은 어느 정도로 책정되어야 하는가?로 볼 수 있음(고승희 외, 2015)
-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을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합리적인 사용료·수수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주운현, 2005)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정리된 세외수입 항목에 대해 원가분석 요율 산정을 위해 연구된 주운현(2005)의 연구에서 제시된 부과기준을 반영하여 적정요율안을 제시하고자 함
  - 즉, 원가보상율을 결정을 위하여 공공정책, 경제적 편익, 서비스 대상자의 구분, 배제성, 경쟁성, 시장정보, 가능성, 재정확충의 기여 여부를 고려해 가중치를 부여하였으며, 이를 위한 전문가 조사 설문지를 구성함<부록 1 참고>

- ① 공공정책: 공공정책이 지녀야할 목표로 적합성, 즉, 세외수입 항목이 공공정책으로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면 세외수입으로 충당, 그렇지 않다면 공공요소를 지니기에 시장가격의 원리를 적용함
- ② 경제적 편익: 경제적 편익의 제공여부, 세외수입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대상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하는가에 대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음
- ③ 경쟁성: 서비스 제공에 대한 경쟁성 여부로서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경쟁성이 높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④ 배제성: 배제가 가능한 재화인 경우라면 요금을 부과하고, 배제가 불가능하다면



- 조세 등 다른 재원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함
- ⑤ 대상자 구분: 편익구분의 가능성 여부로서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익을 누리는 피 제공자의 구분이 가능한지 여부, 가능하다면 요금을 부과하여 충당하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안 강구해야함
  - ⑥ 가능성: 법적근거의 필요성으로 합리적이고 적절한 부과기준이라 하더라도 법적 근거를 통해 요금의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임
  - ⑦ 지방재정 기여: 요금부과를 통해 세외수입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여부
  - ⑧ 시장정보: 정보의 필요성 여부로서 요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각종 정보 들을 수집 및 이해를 높여야하며 이를 통해 적절한 부담률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임

○ 다음 전문가 조사는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8월 30일부터 9월 11일까지 총 13일 동안 조사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표 4-80] 전문가 조사 참여자

구분	내용	참여자수
학계 전문가	- 지방재정전공 대학교수	3명
	- 지방재정전공 연구기관 박사급 연구원	4명
계		7명

**2. 적정요율 산정을 위한 전문가 조사 분석결과**

- 앞서 논의한 8가지 부과기준을 근거로 하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가중치를 부여해 각각의 세외수입 항목별 적정 요율을 검토하였음
  - 7명의 재정전문가로 하여금 8가지 부과기준 각각의 항목에 동의하

는 경우에는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로 표기하도록 하여 동의하는 경우가 과반이 넘으면 그에 한해 가중치 값을 적용하여 항목별 가중치의 합을 계산해 요금의 원가보상율을 산정하였음

- 이렇듯 전문가 조사를 통한 가중치의 합은 요율 산정 시 절대적의미를 나타내기보다는 하나의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는 수치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됨

[표 4-81] 원가보상 적정요율 산정

세외수입 항목	공공 정책	경제적 편익	경쟁성	배제성	대상자 구분	기능성	기여	시장 정보	적정 요율 (%)	요금 현실화 (%)	요금 현실화2 (%)
수영장사용료	18.57	17.14	12.14	12.51	13.57	9.14	5.86	11.07	100.00	27.76	16.75
농어문화체육센터 일반 사용료	18.57	17.14	0	12.51	13.57	9.14	5.86	11.07	87.86	56.47	25.01
세종체육시민회관 일반사용료	18.57	17.14	0	12.51	13.57	9.14	5.86	11.07	87.86	123.52	55.29
축구장 사용료	0	17.14	12.14	12.51	13.57	9.14	5.86	11.07	81.43	89.22	60.00
테니스장 사용료	18.57	17.14	12.14	12.51	13.57	9.14	5.86	11.07	100.0	17.04	11.45
장레식장 사용료	18.57	17.14	12.14	12.51	13.57	9.14	5.86	11.07	100.0	121.71	109.23
화장장 사용료	18.57	17.14	12.14	12.51	13.57	9.14	5.86	11.07	100.0	95.82	91.00
봉안자연장 사용료	18.57	17.14	12.14	12.51	13.57	9.14	5.86	11.07	100.0	569.96	503.55
목욕탕 사용료	0	17.14	12.14	12.51	13.57	9.14	5.86	11.07	81.43	8.74	3.57
캠핑장 사용료	0	17.14	12.14	12.51	13.57	9.14	5.86	11.07	81.43	52.25	23.33
공영주차장 사용료	18.57	17.14	12.14	12.51	13.57	9.14	5.86	11.07	100.0	15.77	7.78
공원녹지점용료	18.57	17.14	0	12.51	13.57	9.14	5.86	11.07	87.86	48.15	
전주점용료	18.57	17.14	0	12.51	13.57	9.14	5.86	11.07	87.86	15.23	31.65
대형폐기물수수료	18.57	17.14	0	12.51	13.57	9.14	5.86	11.07	87.86	78.90	



##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종합

제2절 정책적 제언

# **5장**



##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제1절 연구결과의 종합

- 사회복지수요의 증가 및 지방분권과 관련 지방의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을 통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며 전자의 경우 조세에 대한 주민의 저항이 클 뿐 아니라 과세권의 제약으로 새로운 세원의 발굴에 한계가 작용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법령에 크게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노력정도에 따라 세원의 개발 및 확대가 용이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법령의 미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부재, 체납전담조직의 미비함과 담당인력의 잦은 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으로 세외수입 징수율이 현저히 낮은 현실임
- 본 연구는 세종시를 대상으로 세외수입의 현황을 파악하여 효율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고자 하며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정확한 증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성이 제기됨
- 이를 위해 세외수입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그에 따른 효율체계를 검토, 세외수입 항목별 원가분석을 실시해 현행효율의 적정성을 파악하여 향후 세외수입 효율산정의 기초 및 근거자료로 활용하여 세종시의 사 용료·수수료에 관한 조례제정 등 체계적으로 제도화하는데 근거가 되 고자함
- 본 연구는 이러한 입장을 견지해 14개의 세외수입 항목을 선정하였으

며 시설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원가분석을 실시하였음

- 원가분석을 위하여 각 담당부서로부터 결산자료 등을 받아 이를 통해 운영경비를 산출하였고 자산취득비, 토지가격, 건물가격의 자료 협조를 얻어 자본비용과 감가상각비를 산출함
- 그리고 해당 세외수입 대상의 해당연도의 총 수입금액 자료를 확보해 원가대비 수입금액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결과가 도출되었음
- 요금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세외수입 항목 당 수입금액대비 원가를 비교 즉, 사용료를 원가로 나누어 계산하였으며 봉안자연장, 장례식장, 화장장을 제외하고 그 대부분의 원가보상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세외수입 항목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모두 현실화시키기는 어려운 것이나 세종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세외수입 요금을 적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10% 내외의 세외수입 항목에 대한 우선적 요율 적정성 검토가 필요함

[표 5-1] 세종시의 세외수입 요금 원가보상을 비교

사용료 종류	요금 현실화 1 (%)	요금 현실화 2 (%)
수영장 사용료	27.76	16.75
농어민체육센터 일반사용료	56.47	25.01
세종체육시민회관일반사용료	123.52	55.29
조치원전용축구장 사용료	89.22	60.00
조치원전용테니스장 사용료1	12.78	11.45
조치원전용테니스장 사용료2	17.04	15.27
장례식장 사용료	121.71	109.23
화장장 사용료	95.82	91.00
봉안자연장 사용료	569.96	503.55
장군면 목욕탕 사용료	8.74	3.57
합강캠핑장 사용료	52.25	23.33
주차장사용료(공사·공단)	15.77	7.78
공원·녹지점용료	48.15	
전주점용료	15.23	31.65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78.90	

- 다음은 7명의 재정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공공성, 경제성, 편익성, 배제성, 가능성, 기여, 시장정보 등 8가지의 부과기준을 근거로 설문을 실시하여 부과기준 항목에 대하여 동의한 의견의 수가 과반이 넘는 경우에 한해 가중치 값을 적용 각각의 항목별 적정 요율을 검토하였음
- 전문가 조사를 통한 가중치 값의 합계를 통해 적정요율을 검토하였고 원가보상율과 비교분석을 실시함



[표 5-2] 원가보상 적정요율 산정 요약

세외수입 항목	적정요율(%)	요금현실화1(%)	요금현실화2(%)
수영장사용료	100.00	27.76	16.75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일반사용료	87.86	56.47	25.01
세종체육시민회관 일반사용료	87.86	123.52	55.29
축구장 사용료	81.43	89.22	60.00
테니스장 사용료	100.00	17.04	11.45
장례식장 사용료	100.00	121.71	109.23
화장장 사용료	100.00	95.82	91.00
봉안자연장 사용료	100.00	569.96	503.55
목욕탕 사용료	81.43	8.74	3.57
캠핑장 사용료	81.43	52.25	23.33
공영주차장 사용료	100.00	15.77	7.78
공원·녹지점용료	87.86	48.15	
전주점용료	87.86	15.23	31.65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87.86	78.90	

## 제2절 정책적 제언

### □ 원가분석 방법의 명확화, 원가분석을 위한 자료 및 정보관리

- 먼저, 세종시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세외수입의 요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세외수입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원가분석이 동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원가분석은 합리적인 세외수입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원가분석의 방법의 설정 및 개선이 요구됨
  - 세종시의 경우 세외수입에 대한 원가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향을 보이며 특히, 회계와 원가가 연동되지 못해 원가분석을 위해서 자료를 재작성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즉, 제도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원가분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둘째, 원가분석을 위한 정확한 자료의 구축과 정확한 원가분석이 함께 동반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원가분석을 고려한 회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적정요율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운영원가가 매우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세종시의 경우 전체 시설을 통합한 계정으로 관리하는 한계가 있음
  - 아울러 시설 및 서비스와 관련된 수입 지출항목의 통일된 기준 마련과 함께 직영으로 운영되는 서비스의 경우 전담 관리조직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여 원가정보 관리가 부실한 상황임

## □ 적정 요율 기준 및 표준운영 원가 제시 검토

- 첫째, 요율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원가보상율의 합리적인 결정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음
  - 사용료·수수료 등의 원가가 분석된 이후에 이 원가를 통하여 사용료·수수료의 부과정도를 고려해야 함
- 그러나 모든 세외수입 항목에 대해 원가분석의 결과를 적용하여 부과함에 있어 각 세외수입 대상의 특성(공공성, 시장성, 배제성, 편익성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둘째, 일괄적으로 하나의 요율을 적용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원가보상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세외수입 대상의 성격, 여건 및 상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동의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요율을 결정하는 기준의 마련이 매우 어려움
- 이에 대한 한계점을 인지하여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지표의 개발과 적용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 셋째, 요율(가격체계)은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견지해 서비스의 공급비용을 충당할 수 있고, 해당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가격이 설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물론, 특정의 서비스에 한정, 공익성을 고려해 요율체계를 일부 차등화 할 수 있으나 원가보상을 충당하는 가격의 설정에 대한 기본 원칙은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주만수, 2015)
  - 그 예로 상하수도 요금, 지하철 요금의 경우 사용료의 요율이 원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상황에서 해당 서비스의 지속적인 공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정지출과 비용부담자간의 공평성 문제로 갈등이 유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사용료를 중심으로 한 적정요율체계에 대한 고민이 매우 중요함(임성일, 2014)

-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 등을 중심으로 공익성이 훼손되지 않은 범위에서 유사한 항목에 대해서 지역적 특성, 통일성을 반영해 표준적인 원가를 제시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세외수입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시설 및 서비스의 종류, 이용자, 그리고 운영주체 등이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사한 유형의 시설 및 서비스 역시 그 원가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타 지자체와 비교를 통한 원가기준의 설정이 불가능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적정요율을 결정하기 위해 표준 원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고 판단됨

#### □ 정기적인 요율 현실화 반영, 적극적인 홍보

- 첫째, 사용료·수수료를 중심으로 한 세외수입에 대해 원가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3년 마다 요율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할 뿐 아니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됨(주만수 외, 2015)
- 둘째, 세외수입 정책이 보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세외수입에 대한 인식과 순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임
  - 즉, 세외수입에 대한 수익자 부담원칙, 원가현실화 적용 등 궁극적으로 주민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취지를 홍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의 크기보다 원가비용이 큰 대상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현재의 사용료 수수료 서비스가 장기적으로 제공되기 힘들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강조하고, 지역주민과 소통을 통해 이해를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조임곤·이상훈, 2013)

## □ 관련제도의 개선 방안 마련

- 첫째, 이용자가 증가 될 수 있는 고민이 요구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수입금을 재투자 하는 방안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세외수입의 시설과 관련된 원가보상율은 무엇보다 운영주체, 방식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원가보상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입을 증대하고 지출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당연함
  - 아울러 세외수입의 운영실적에 대한 효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자체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둘째, 세외수입의 적정요율을 도출하고 이에 근거해서 요율을 조정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각 대상별로 세외수입을 관리 운영과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이 요구됨
  - 무엇보다 원가분석 및 적정한 요율을 도출하기 위해 단순히 얼마 정도의 원가보상을 하겠다는 시도보다는 관련 전문가, 담당공무원, 회계사 등이 함께 공동으로 이를 위한 계획수립과 개선방안, 그리고 세외수입의 적정요금 수준에 대한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담당공무원이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적정수준을 도출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함에 있어 한계가 있음
- 셋째, 현재 복잡하고 다양하게 상의법규에 의하여 분산된 규정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단순화할 필요성도 제기됨
- 세외수입과 관련된 시설과 서비스가 매우 많아 그 운영방식 역시 매우 다양하고, 시설물과 서비스에 대해 상의법규에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으며,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개별조례로 정해 징수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개별 조례에 분산되어 규정된 사용료 수수료의 요율을 포괄할 수 있는 통합적인 규정을 정하고, 개별조례상에서 대상 세외수입의 부과목

적, 부과근거, 부과방법, 부과시기, 그리고 부과기준 등에 대해서 개별적 사항만 규정하는 통합적인 법제화 추진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 새로운 세외수입 발굴을 위한 노력

-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종시에서 사용료·수수료를 중심으로 제공되는 세외수입의 대상은 그 원가보상율이 높지 않다는 점을 보면 원가대비 사용료, 수수료 요율을 높인다는 것은 주민의 저항을 고려해 볼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세종시 차원에서 일정 부분 원가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단계적인 요율체계의 정비에 대한 필요성은 있으나 이에 함께 새로운 행정서비스에 대한 사용료·수수료를 부과하는 노력도 필요함
  - 그 예로서, 스포츠, 레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료·수수료를 적절히 발굴하여 세종시의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새로운 세외수입의 발굴을 위해서는 특정 서비스에 대해 다양한 방식의 부과 방식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참고문헌

- 강종규·김언호(2007), “우리나라 지방세외수입의 확충방안-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영남지역발전연구> 제37권. 119~147.
- 고승희 외(2015), <지방세외수입 분석과 정책방향-천안시 공공수수료 및 사용료 중심으로>, 충남연구원 연구보고서.
- 고승희·주운현(2016),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요율 현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천안시 사용료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학보> 제13권 제2호. 127~147.
- 김길복·이선영·곽명훈(2015),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 용역, 한국수도경영연구소 연구보고서.
- 김길복·이선영·홍지영(2015),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요금 현실화방안 연구 용역, 한국수도경영연구소 연구보고서.
- 김대영(2014), “지방세외수입 징수체계 효율화에 대한 연구”. <재정정책논집> 제16권 제4호. 103~138.
- 김대영·강민구·김민정(2014), <지방세외수입 징수체계 효율화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무열·마정화(2016), <지방세외수입 기본조례 제정의 타당성 검토: 대구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종순·주운현(2005), “수수료 요율결정을 위한 ABC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7권 제4호. 139~163
- 김진욱·김진태(2018), <지방세외수입 요율의 결정방안: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보고서.
- 마정화(2015), <지방세외수입금의 법적 지위와 징수 관련 법제 정비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보고서.
- 마정화·유현정(2015), <지방세외수입법 적용대상 확대 및 체납처분절차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보고서.
- 배인명·조임곤·박정수(2015), <세외수입 업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보고서.
- 신두섭(2008), “홈페이지 광고매체를 활용한 지방정부의 세외수입 증대 방안-경상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22권 제3호. 187~205.
- 이상훈·사명철(2016), <지방세외수입의 현황과 과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상훈·김흥환·마정화·이정훈·이유진(2017),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지방세외수입 운영체계개선>,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세구·안주희(2004), 〈서울시 세외수입 증대방안-사용료·수수료의 현실화를 중심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재호(2014), 〈울산광역시 자체수입 증대방안-세외수입을 중심으로〉, 울산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환범·권오규(2002),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상적 세외수입 증대 방안”.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2권 4호. 121~141.
- 임상수·최원구·박지현·박지혜(2014), 〈세외수입 운영진단제도 도입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 조임곤·이상훈(2013), 〈지방세외수입 확대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보고서.
- 조임곤(2016), 〈사용료·수수료 원가분석체계 마련: 표준수수료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보고서.
- 조형석·문상호(2007), “수수료 요율결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원가분석 방법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20권 제1호. 219~246.
- 주만수·주운현(2015), 〈지방세외수입 신규 수입원 발굴에 관한 연구: 지방세외수입 발굴의 원칙 및 기준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보고서.
- 주운현(2005), “사용료·수수료 요율의 부과기준에 관한 연구: 원가보상율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9권 제2호. 317~335.
- 주운현(2006), “수수료 요율 결정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원가분석 방법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20권 제1호. 219~246.
- 주운현(2008),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정책의 쟁점과 운영방향에 대한 소고(小考)”.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2권 제1호. 71~93.
- 진희원(2015), 〈세외수입 실무행정의 합리적 개선방안: 서울시 세외수입행정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보고서.
- 최근열(1997), “지방세외수입의 실태와 확충방안”.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9권 제1호. 229~248.
- 최원구(2015), 〈일본의 지방세외수입 법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보고서.
- 최원구·김진아(2016), 〈지방세외수입 세입예산 과목의 체계적 정비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보고서.
- 허원·김필현(2016), 〈지방세외수입법상 체납처분절차의 신설방안 검토〉,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보고서.
- 홍근석(2015),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제도 개성방안〉, 대구경북연구원 연구보고서.
- 오종택(2015), “피해는 소비자가 보는데 왜 정부가 과징금을 받나”, 〈아시아경제〉 2015.5.24.일자
- 행정안전부, 〈2017년도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





## 부록

ID

### 『세종시 세외수입 요율 적정성 검토 연구』 전문가 조사

안녕하십니까?

세종시는 지방세외수입의 확충을 위해 세외수입 요율적정성 검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러한 일환으로 세외수입의 요율을 정할 때 원가와 비교해 어느 정도의 요율을 책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향후 세종시의 세수확보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응답하신 내용은 순수하게 통계적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선생님의 답변을 통해 세외수입의 적정한 요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 8월

연구책임자: 대전세종연구원 김흥주 연구위원

TEL:042-530-3537

e-mail: myutos78@dsi.re.kr

### 👁 배경지문

본 연구를 통해 선정된 세외수입 항목에 대한 원가분석을 실시하였고, 원가분석결과와 실제 세외수입금액과 비교해 분석하여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의 책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공공재로서 어느 정도의 요율을 부과해야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주운현(2005)의 연구는 전문가 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해 적합한 기준을 설정 제시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요율책정에 대한 기준채택과 가중치를 제시하였으며 개별세외수입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 적정부과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세외수입의 요율 산정을 위해 공공정책, 경제적 편익, 대상자구분, 배제성, 경쟁성, 시장정보, 가능성, 기여 등 8가지 기준을 통해 선정된 세외수입 항목의 부합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그 기준으로서 타당성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기 준	채택		제외	
	빈도	%	빈도	%
1. 이 서비스가 공공정책에 부합되는가?	11	11.83	3	15.79
2. 행정서비스의 직접적 이용자에게 경제적 편익을 가져다주는가?	13	13.98	1	5.26
3. 이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경쟁성이 있는가?	12	12.90	2	10.53
4. 이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배제성이 있는가?	13	13.98	1	5.26
5. 편익을 누리는 개인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	12	12.90	2	10.53
6. 해당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부과가 법률적, 행정적으로 가능한가?	13	13.98	1	5.26
7. 사용료의 부과수입이 지방재정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는가?	8	8.60	6	31.58
8. 이 서비스에 대한 요금부과에 있어서 시장정보(원가)가 필요한가?	11	11.83	3	15.79
총계	93	100.00	19	100.00

기 준	우선순위	가중치(%)
1. 이 서비스가 공공정책에 부합하는가?	1	18.57
2. 행정서비스의 직접적 이용자에게 경제적 편익을 가져다 주는가?	2	17.14
3. 이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경쟁성이 있는가?	3	13.57
4. 이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배제성이 있는가?	4	12.51
5. 편익을 누리는 개인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	5	12.14
6. 해당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부과가 법률적, 행정적으로 가능한가?	6	11.07
7. 사용료의 부과수입이 지방재정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는가?	7	9.14
8. 이 서비스에 대한 요금부과에 있어서 시장정보(원가)가 필요한가?	8	5.86

자료: 주운현, “사용료 수수료 요율의 부과기준에 관한 연구-원가보상율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9권 제2호, pp322인용

위의 의견조사는 사용자 수수료의 일반적인 측면에서 그 부과기준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사용자 등의 부과수입이 지방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가장 낮게 나온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용자 및 수수료가 지방재정에 차지하는 비율이 현실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재정기여도에서 낮은 인식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렇게 논의되어 도출된 부가기준을 통해 세종시의 세외수입 대상에 적용하여 설문을 재구성하여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즉, 위의 배경지문은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를 위한 설문지가 도출된 근거를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 1. 세외수입 항목 당 부과기준

기 준	
1. 이 서비스가 공공정책에 부합하는가?	공공정책
2. 행정서비스의 직접적 사용자에게 경제적 편익을 가져다주는가?	경제적편익
3. 이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경쟁성이 있는가?	경쟁성
4. 이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배제성이 있는가?	배제성
5. 편익을 누리는 개인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	대상자구분
6. 해당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부과가 법률적, 행정적으로 가능한가?	가능성
7. 사용료의 부과수입이 지방재정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는가?	기여
8. 이 서비스에 대한 요금부과에 있어서 시장정보(원가)가 필요한가?	시장정보

- 공공정책: 공공정책이 지녀야할 목표로 적합성, 즉, 세외수입 항목이 공공정책으로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면 세외수입으로 충당, 그렇지 않다면 공공요소를 지니기에 시장가격의 원리를 적용해야함
- 경제적편익: 경제적 편익의 제공여부, 세외수입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대상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하는가에 대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음

- 경쟁성: 서비스 제공에 대한 경쟁성 여부로서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경쟁성이 높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배제성: 배제가 가능한 재화인 경우라면 요금을 부과, 배제가 불가능하다면 조세 등 다른 재원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함
- 대상자 구분: 편익구분의 가능성 여부로서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익을 누리는 피 제공자의 구분이 가능한지 여부, 가능하다면 요금을 부과하여 충당,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안 강구해야함
- 가능성: 법적근거의 필요성으로 합리적이고 적절한 부과기준이라 하더라도 법적 근거를 통해 요금의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임
- 지방재정 기여: 요금부과를 통해 세외수입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지 여부
- 시장정보: 정보의 필요성 여부로서 요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각종 정보들을 수집 및 이해를 높여야하며 이를 통해 적절한 부담률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임

이렇듯 본 연구 역시 주운현(2005)의 연구를 바탕으로 세외수입 항목 당 부과기준을 위의 표에서와 같이 재구성하였으며 이를 참고(바로 위의 기준 표 참고)하여 다음 아래의 세외수입 항목에서 부과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O, 그렇지 않으면 X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항목	공공 정책	경제적 편익	경쟁성	배제성	대상자 구분	가능성	기여	시장 정보
1. 수영장사용료								
2.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일반사용료								
3. 세종체육시민회관 일반사용료								
4. 축구장 사용료								
5. 테니스장 사용료								
6. 장례식장 사용료								
7. 화장장 사용료								
8. 봉안자연장 사용료								
9. 목욕탕 사용료								
10. 캠프장 사용료								
11. 공영주차장 사용료								
12. 공원누적점용료								
13. 전주점용료								
14. 대형폐기물수수료								

## II. 인적사항

DQ1) 귀하의 직업은? ① 교수 ② 실무공무원 ③ 연구원

DQ2) 귀하께서는 관련 분야 경력이 얼마나 되십니까?

--	--

개  
월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